

2025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구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9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3
2) 고용노동부 소관	28
3) 기상청 소관	41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42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43
2) 고용노동부 소관	133
3) 기상청 소관	211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215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25. 10. 14.(화) ~ 10. 30.(목) [1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기관 : 총 95개 기관	
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생물자원관 (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화학물질안전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9) 한강유역환경청 (10) 낙동강유역환경청 (11) 금강유역환경청 (12) 영산강유역환경청 (13) 수도권대기환경청 (14) 원주지방환경청 (15) 대구지방환경청 (16) 전북지방환경청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수치모델링센터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3) 수도권기상청 (4) 부산지방기상청 (5) 광주지방기상청 (6) 강원지방기상청 (7) 대전지방기상청 (8) 대구지방기상청 (9) 제주지방기상청 (10) 국가기상위성센터 (11) 기상레이더센터 (12) 국립기상과학원 (13) 항공기상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7) 한강홍수통제소 (18) 낙동강홍수통제소 (19) 금강홍수통제소 (20) 영산강홍수통제소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국립공원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국립생태원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8) 한국상하수도협회 (9) 한국환경보전원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2) 한국에너지공단 (13) 한국에너지재단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16) 한국전력공사 (17) 한국수력원자력 (18) 한국전력거래소 (19) 한국전력기술 (20) 한전KPS(주) (21) 한전KDN (22) 한전MCS (23) 한국남동발전 (24) 한국중부발전 (25) 한국서부발전 (26) 한국남부발전 (27) 한국동서발전 (28) 한전원자력연료(주) (2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 한국전기안전공사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3)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2) 최저임금위원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고용정보원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 노사발전재단 (9) 건설근로자공제회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 한국잡월드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

4. 감사반의 편성

가. 편성원칙

감사반의 편성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16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나. 감사반

감사반장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감사반원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	
	김태선 위원	
	박 정 위원	
	박해철 위원	
	박홍배 위원	
	이용우 위원	
	이학영 위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김소희 위원	
	김위상 위원	
	우재준 위원	
	윤상현 위원	
	조지연 위원	
	정혜경 위원	비교섭단체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14일(화)	10:00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10월 15일(수)	10:00	고용노동부	국회	
10월 16일(목)		자료정리		
10월 17일(금)	10:00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오후	현장시찰	김포공항	출장
10월 18일(토)~19일(일)		휴일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20일(월)	10:00	중양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현장국감 출장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21일(화)	오전	현장시찰	울산 (현대중공업)	출장
	14: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울산 (근로복지 공단)	현장국감
10월 22일(수)		자료정리		
10월 23일(목)	10:00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 한전KDN 한전MCS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0월 24일(금)	전일	현장시찰	한국서부발전 태인본부 및 고창해상풍력 실증단지 안동댐 등 (충남 태안 및 전북 고창)	출장
10월 25일(토) ~ 26일(일)		휴일		
10월 27일(월)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월 28일(화)		자료정리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29일(수)	10:0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국회	종합감사
10월 30일(목)	10:00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종합감사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2	4	6
출 석	1	4	5
불 출 석	1	.	1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11	5	16
출 석	6	5	11
불 출 석	5	.	5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25. 10. 14.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중대재해 피해 관련	

■ 2025. 10. 15. 고용노동부 본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3명)	정종철	쿠팡폴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확인	
	이배원	(주)니토옵티칼 대표이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	
	도세호	SPC 대표	SPC 삼립 시화공장 기계끼임 사망 사고 관련	
참고인 (4명)	김경숙	종로구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장	장애인 제도 관련	
	정경희	학교급식소 조리실무사	학교급식소 현장 의견 청취	
	최현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	
	문지석	검사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 2025. 10. 20.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기존 환경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참고인 (1명)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멸종위기종 관련 환경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5. 10. 2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에너지 부문)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1명)	주상호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사무처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일자리 전환 관련	

■ 2025. 10. 27.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3명)	박영우	前 대유위니아 회장	대규모 임금체불 책임 회피와 사재 출연 불이행, 가족 지분 매입 행보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	대규모 임금체불 책임 회피와 사재 출연 불이행, 가족 지분 매입 행보	X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대우버스 위장폐업 관련	X

■ 2025. 10. 29.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종합감사)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1명)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전기차 확대	X
참고인 (2명)	최광현	종이빨대생존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종이빨대 도입 관련 환경부 정책혼선으로 인한 피해	
	송민	공공노련 산업전환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지원실태 청취	

■ 2025. 10. 30.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종합감사)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5명)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문제	X
	*김광일 MBK 부회장 자진출석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황순배	네이버 인사총괄	사측의 노조법 2·3조 개정 에 따른 통합교섭에 대한 의향 확인 및 노조법 2·3조의 필요성, 효용성 확인하는 한편, 나아가 직장내 괴롭힘 전격 임원의 회사 복귀에 따른 문제점 등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함.	
	송치영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2025년 7월까지, 산재 사망자 5명 발생, 건설업 부문 2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명사고 관련	X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마트 기간제 사원 확대 차별	X
	*강인석 이마트 지원본부장 자진출석			
참고인 (1명)	비살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책임 체계 명확화 필요 (2) 환경정책 퇴보문제 개선 필요 (3) 에너지 정책 퇴보문제 개선 필요 (4)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및 속의 기구 구축 필요 (5)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복원 필요 (6) 수도권 3-1 매립지 사용 종료(2025년) 관련 재협의 필요 (7) 생활환경 관리체계 복원 및 전담조직 신설방안 검토 필요 (8)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관련 제출 자료 누락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9) 산하기관 직원 비위행위 징계 및 인사 윤리에 대한 감사 필요 (10) 산하기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 처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11) 원자력환경공단 조직윤리 개선계획 마련 필요 (12)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지침 마련 필요 (13) 산불 예방 및 친환경적 복원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 필요 (14)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지침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규정 개정여부 확인 및 개정 필요
【물관리 부문】 (1)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 등의 과학적 재평가 필요 (2) 4대강 보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3) 4대강 수질 개선에 대한 과학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4대강 재자연화 및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 (5) 속도감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필요
- (6)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자원 공급 저하 문제 해결 필요
- (7) 보 개방과 취수·양수 시설 문제
- (8) 세종보 기본계획 수립 시점 명확화 필요
- (9) 보 개방 및 해체 필요
- (10) 세종보 개방에 따른 전력생산 및 재정손실 문제와 재가동 여부 판단 필요
- (11) 기후대응댐 사업 재검토 추진 필요
- (12) 기후대응댐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접근 필요
- (13) 기후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중단 관련 정책 신뢰성 문제 개선 필요
- (14) 기후대응댐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15) 댐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16) 댐 수몰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량 건설 등 대책 마련 필요
- (17)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 필요
- (18) 노후 상수관 정비시 재정자주도 고려 필요
- (19) 서울시 지반위험지도 공개 필요
- (20) 조류경보제 개선을 위한 조류독소 기준 법제화 필요
- (21) 녹조 독소의 인체 위해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22) 호수공원 녹조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23) 낙동강 녹조 피해 조사 연례적 실시 및 농식품에 대한 녹조 유해성 조사 필요
- (24) 기존 합의 사항을 고려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필요
- (25) 물산업클러스터 통합 지원 필요
- (26) 우크라 재건사업 MOU 추진 실효성 및 예산 낭비 전면 재검토 필요
- (27)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28) 분산형 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29) 강릉 단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30) 초순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 강화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1) 농업 용수를 위한 홍수조절 및 소하천 관리 컨트롤 타워 필요
- (32)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 점검 필요
- (33) 낙동강 유역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
- (34)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물관리 일원화 측면의 연구검토 필요
- (35) 환경조사 위해성평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36)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검사 이행을 종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 (37)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설정 기준 개선 및 전수조사 실시 필요
- (38)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제도의 준비 부족 개선 및 지자체 지원책 마련 필요
- (39) 바이오가스 미활용(단순 연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산업화 전환 필요
- (40) 상수원보호구역 내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41)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배면 매립토 확보 방안 개선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필요
- (42) 분류 관리 강화 필요
- (43) 석포제련소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이전·폐쇄 등 근본적 해결 필요
- (44)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후 콘크리트 맨홀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45)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46) 한강버스 사업의 환경영향 및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 검토 필요
- (47)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관리 필요
- (48) 강릉 단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 관리 체계 정비 필요

【자연보전 부문】

- (1) 동물복지 관련 시행령 정비 필요
- (2)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고보조금 구조 개선 필요
- (3)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책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곰 사육 종식에 따른 사육곰 보호 방안 마련 및 민간협력 강화 필요
- (5)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관련 국민 안전 대책 마련 필요

【대기환경 부문】

- (1) 메틸브로마이드 대기 배출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
- (2)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 관련 제도개선 필요
- (3) 납 2차 제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전수조사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필요
- (4)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 확보 필요
- (5)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시설의 실효성 확보 필요
- (6)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필요
- (7)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중대형 자동차에도 적용 필요

【자원순환 부문】

- (1) 텀블러의 지속적 사용 대책 마련 필요
- (2) 플라스틱 감량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3)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완 필요
- (4) 비닐장갑 등 일회용품 원천 감량 추진 필요
- (5) EL724 인증제도 개선 필요
- (6) 의류 재고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7) 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상의 문제 개선 필요
- (8) 빨대 재질별 전과정평가(LCA)의 정확한 이행 및 재질 선택의 시장 자율성 보장 필요
- (9) 식품 포장재 등 실질적 폐기물 원천 감량 필요
- (10) 과대포장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필요
- (11)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통계의 오류 시정 및 실질적 통계 산정 체계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2) 일회용품 규제 정책 변경에 따른 종이빨대 업계 피해 구제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필요
- (13)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방지 필요
- (14)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필요
- (15)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술 개발 기능 강화 필요
- (16) 폐기물 소각 기반 에너지의 재활용 분류 문제 개선 필요

【환경보건부문】

- (1) 살생물제품 전환에 따른 승인 지연 대응 필요
- (2) 유해성미확인물질 항목에서 피부부식성 물질 제외 결정 재검토 필요
- (3) 부적합 해외 직구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4) 온라인 유통 불법 생활화학제품 차단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5) 휴업 주유소의 사실상 방치 관련하여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6)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 (7)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8) 과불화화합물 재고 파악 및 대체 물질 전환 가속화 필요
- (9) 어린이 환경성 질환 급증 및 지역별 격차 원인 규명을 위한 전국 정밀 실태조사 실시 필요
- (10) 생식독성 물질(TPO) 함유 젤네일 유통 차단 및 해외 금지 물질의 신속한 국내 적용 체계 마련 필요
- (11)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 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후부문】

- (1) 선진국 수준의 2035 NDC 목표 설정 필요
- (2) 현실을 반영한 목표 지향적인 NDC 설정과 탈탄소 산업 정책 복원 필요
- (3) NDC 목표 설정시 산업 경쟁력과 현실성 고려 필요
- (4) 2050 NDC와 불일치하는 LNG 전환 계획 수정 및 폐지-건설 시차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5) NDC와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이행경로 구체화 및 법제화 검토 필요
- (6) NDC 목표 수립과정에서의 기술·재정적 뒷받침 강화 필요
- (7) 기후위기 임계점 경고와 대책 마련 필요
- (8) 국립으로 기후위기체험센터를 건립할 필요
- (9)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10) 배출권거래제(ETS) 4차 계획 수립 시 산업계 국제 경쟁력 고려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11) 유상할당 배출권의 단계별 확대 필요
- (12)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조정 필요
- (1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리 강화 필요
- (14) 기후보험의 실질적 도입 및 재정 뒷받침 필요

【녹색부문】

- (1) 교통전환의 대상 다변화 필요
- (2)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제작사 가격 인하 유도 필요
- (3) 전기차·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국내 산업 보호 필요
- (4) 전기차 배터리 안전정보 활용 제도 개선 필요
-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종합 대책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6) 전기 저장버스 보조금 차등지급체계 도입 관련 관계부처 협의 필요
- (7) 학교 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방치 문제 해결 필요
- (8)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9) 녹색기업 지정 제도의 재검토 및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
- (10) 석탄화력발전 폐지 후 대체 건설 사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11) 철강 등 주력 산업 보호 및 일자리 대책을 동반한 현실적인 감축 로드맵 제시
- (1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및 노동자 참여 보장 필요
- (1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하청·자회사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직무 전환 대책 마련 필요
- (14) 발전사 우드펠릿 원산지 관리 소홀 및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15) 목재펠릿의 재생에너지 인정의 문제점
- (16)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
- (17)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 필요

【수소·에너지부문】

- (1) 도시형 태양광 확대 대책 필요
- (2) 국산 태양광 패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 필요
- (3) 태양광 부품 국산화 및 보안관리 강화 필요
- (4)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과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5)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등 검토 필요
- (6) 수도권 재생에너지 전력확보를 위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필요
- (7) 분산에너지특구 조속 지정 필요
- (8) 재생에너지 R&D 복구 필요
- (9)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 (10)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전면 재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1) 재생에너지 시스템 비용 반영 및 정확한 비용 추계 필요
- (12) 매립시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조정 및 제도 개선 필요
- (13)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재생에너지 재투자 확대 및 K-RE100 이행수단 다변화 필요
- (14) 기후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히트펌프 보급 대책 마련 필요
- (15)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의 국제 기준 부합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복원 필요
- (16)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 조기 완료 필요
- (17)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풍력 허가 과정의 안전성 재검토 및 발사체 낙하물 위험 대책 마련 필요
- (18)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지원 확대 필요

【전력부문】

- (1) 발전공기업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접속제한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
- (3)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
- (4)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 및 적극적인 수요관리 필요
- (5) 남동발전 배열회수보일러 입찰 관련 감사 필요
- (6)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 (7) 유연 접속 확대 및 석탄가스발전소 최소발전용량 하향조정 필요
- (8)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 준비 철저 필요
- (9) SMP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0)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블랙 스타트(Black Start) 대응을 위한 복합 화력 대체 방안 마련
- (11)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의 객관성 확보 필요
- (12)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필요
- (13) 전력망 입지 선정 시 주민 수용성 및 소통 강화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 (15)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계획 등 마련 필요
- (16) 발전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7) 정의로운 전환 대상에 민간 발전소를 포함할 필요
- (18) 발전정비 산업 구조 재편 필요
- (19) 전력직접구매제도 개선 필요

【원전부문】

- (1)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정책의 엇박자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 문제
- (2) 정부 에너지 정책의 불일치 문제
- (3) 신규원전 도입 또는 연장 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4) 원전-재생에너지 에너지 믹스 재정립 필요
- (5) 공정한 여론조사 설계 필요
- (6)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 필요
- (7) AI·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원전 활용 필요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간 역할과 업무분장 구조 재점검 필요
- (2) 유역환경청에서의 민관협의체 재추진 필요
- (3)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지침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규정 개정여부 확인 및 개정 필요
- (4) 노조법 시행 관련 철저한 대비 필요
- (5) 멸종위기종 무허가 수입·반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6)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 난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7)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마련 필요
- (8)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9)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복지 제도 개선 필요
- (10) 재해복구센터(DR) 실효성 제고 및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
- (1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필요
- (12) SRF·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분야 그린워싱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필요
- (13)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성 확보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 (14) 에너지 산하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체계 강화 필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 (1)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직기강 문제
- (2) 지역 주민 조롱 현수막 게시 등 공직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필요
- (3) 언론 상대 무분별한 소송 자제 및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
- (4)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 및 재정비 필요
- (5) 신한울 3·4호기 추진 점검 필요
- (6)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의 규정 준수 및 이행 촉구
- (7) 원전 출력 감발 증가 및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 필요
- (8)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불평등 계약 논란 해소 및 수익성 검증 필요
- (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확보 필요
- (10) 원전 출력 제어로 인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

- (1) 초순수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 필요
- (2) 4대강 홍보관 정치적 활용 중단 및 운영 개선 필요
- (3) 우크라 재건사업 MOU 추진 실효성 및 예산 낭비 전면 재검토 필요
- (4)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지속 관리 필요
- (5) 민간기업인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6) 국가중요시설인 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와 보안체계 구축 및 확립 필요
- (7)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의 상수도시설 개선 필요
- (8)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지방이전 검토 필요
- (9) 상수도 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침하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10) 공사 입찰 관련 내부 심의위원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11) 저수지 전도현상에 따른 수질 오염 예방 및 전수조사 실시
- (12)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 필요

▶ 한국환경공단 ◀

- (1)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개선 필요
- (2) 안전관리 부실 책임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3) 사업 추진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R&D 예산 편성 필요
- (4) 성능평가 불가 폐배터리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 (5)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및 EV이음 어플 등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개선 필요
- (6)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7) 지하수 시설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8) EPR에 섬유폐기물 포함 필요

▶ 국립공원공단 ◀

- (1) 퇴직연금제도의 전면적 도입 필요
- (2) 휴양공원 제도의 도입과 청량산 도립공원 및 도산구곡예의 지정 필요
- (3) 국립공원내 안전사고 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과 사망사고가 빈번한 비법정 탐방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 해안쓰레기 수거 인력과 예산·장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5) 기상이변 시 고지대 대피소 직원의 근무제도 보완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6) 주왕산 국립공원 산불 피해 관련 신속한 복원 및 조림 사업 필요

▶ 국립생태원 ◀

- (1) 국립생태원 누수 반복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
- (2) 용역 중단시 회수비용이 환입비용 초과할 경우 절차 중단 필요
- (3) 생태원 누수 관련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4) 국립생태원 연구직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
- (5) 생태교란종인 배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 (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
- (7) 동물원 허가제 전환에 따른 대규모 유기 사태 대비 및 생태계 보호 대책 수립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1)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및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3) 환경표지 무단 사용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4) 수소염화불화탄소가 검출된 중국산 PF보드와 관련된 친환경인증 문제 개선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불법 수의계약인 그린에너지개발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결필요
- (2)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의 사명변경과 사업 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창출 필요
-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 드림파크 CC내 캐디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 한국에너지공단 ◀

- (1) 에너지바우처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 방식 개선 및 부유식 해상 풍력 보급 활성화 필요

▶ 한국전력공사 ◀

- (1)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 필요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 필요
-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
- (4) 섬 지역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접고용 검토 필요
- (5) 한전 KDN 민영화(지분 매각) 계획의 전면 재검토 필요
- (6)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계획 대응전략 수립 필요
- (7)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대책 마련 필요
- (8) 한전MCS 검침 업무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9) 미사용 전력망에 대한 회수 및 재분배 등 해결대책 마련 필요
- (10) 지반침하 사고 관련 해결방안 마련 필요
- (11)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의 원활한 이행 필요
- (12) 적정 안전관리비용 지급 필요
- (13)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 준비 철저 필요
- (14)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및 제출 회피 정황에 대한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한국전력거래소 ◀

- (1)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정보 공개 필요
- (2) 재생에너지 실시간 시장 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준비 필요
- (3) 전통적 발전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 필요
- (4) 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 정산조정계수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전KPS ◀

- (1) 불법적인 고용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 내부 인사 미진행 해소 필요

▶ 한전MCS ◀

- (1) 검침 업무 축소에 따른 일자리전환대책 마련 필요

▶ 발전 5개사 ◀

- (1)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 확대 필요
- (2)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 동반성장 협력대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한국전기안전공사 ◀

- (1)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제도 공사 직접 점검 대상 확대 필요
- (3)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점검 이행을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 한국지역난방공사 ◀

- (1) 대구 지역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 관련 매립가스(LFG) 사용 약속 이행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 (1) 우오수관 분류사업 가속화 필요
- (2)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지방청에서의 정확한 문제 지적과 중앙에의 보고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한강버스 사업의 환경영향 및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 검토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2)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비율 개선 필요
- (3) 거짓으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재발 방지대책 필요
- (4) 화학물질 시설 관리 체계를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낙동강홍수통제소 ◀

- (1) 물재해예방과 관련된 적극적 대비책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 (1) 하수 기반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검토 필요
- (2) 가뭄 대응을 위한 빗물 활용 연구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

- (1)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 (1) 넥스트 팬데믹 준비 관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예산 등 지원 필요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1) 2035 NDC 감축목표 재검토 필요

2)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1) 중대재해 수사조직의 주요 지청단위 확대 필요 (2) 공무원 차별금지 및 처우 개선 필요 (3) 근로감독 업무 기능 총괄 본부 조직 신설 검토 필요 (4)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의 상고 취하 검토 필요 (5) 고용노동부 산하 R&D 전담기관 설립방안 검토 필요 (6) 근로감독관 증원 예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업무 수행 기반 마련 필요 (7) 공공기관의 낮은 임금 수준 문제를 개선할 필요 (8) 공공기관 인력 충원 필요 (9)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위법행위 감사 필요 (10) 고용정보원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11) 지청 지휘체계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지청의 대응 지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2)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통합적 노력 필요 (13) 노동위원회의 적정 조사관 인원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필요 (1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보강 필요 (16) 중앙노동위원장의 무분별한 출장 및 강의료 수령과 관련한 특정 감사 필요 (17) 한국폴리텍 업무수행 관련 감사 및 조사 필요 (18)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필요 (19)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20) 고용평등상담실 관련 예산 증액 노력 필요

【고용 부문】

- (1) 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 필요
- (2) 내일배움카드의 교육과정의 최신화 필요
- (3) 국내 고용 생태계 회복 위한 고용 대책 수립 필요
- (4) 고용허가제 쿼터와 발급실적간 차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 (5)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반적인 정책 개선 필요
- (6) 지자체와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사항 협의 필요
- (7)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8)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활성화 필요
-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 (10) 석탄발전산업종사자를 고려한 행정 필요
- (11)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12)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전공 제한 철폐 필요
- (13) 한미투자협정으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
- (14)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5) 고용보험 상실신고 허위 작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6) 해외 취업 사기성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노동 부문】

- (1) 노조 내부 정보 등의 대북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 (2) 개정 노조법에 대한 보완 입법 검토 필요
- (3) 노동시장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 (4) 개정 노조법 제2·3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
- (5)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적극적 중재 필요

- (6)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 (7)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대한 조치 필요
- (8) 전 정부 노동행정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9)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침 재개정 필요
- (10)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의 신속 추진 필요
- (11) 임금체불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12) 수사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13) 한국전력 섬발전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조치 필요
- (14) MBC 특별근로감독 재조사 필요
- (15) 안전한 일터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 (16) 고 김충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
- (17) 퇴직연금 기금화 등에 대한 실효
- (18)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적극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9)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필요
- (20)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균형잡힌 추진 필요
- (21)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노력 필요
- (22)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재구조화 필요
- (23)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필요
- (24)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
- (25) 효율적 근로감독 방안 모색 및 불시 감독 비율 제고 필요
- (26)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 재검토 필요
- (27)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적정성 제고 필요
- (28) 임금구분지급제 시스템 구축 필요
- (29)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장려금 등 재구조화 필요
- (30)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종합적 대책

주요 감사 실시내용

수립 필요

- (31)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후속조치 필요
- (32) 공정한 감독을 통한 쿠팡 노동환경 개선 필요
- (33)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수립 필요
- (34) 물가상승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 (35) 월 자율근무제 시범 도입 검토 필요
- (36) 임금체불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책임지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필요
- (37) 니토텐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재고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 (3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협력체계 활성화 필요
- (39) 이랜드리테일 특별감독 필요
- (40) KAI 임직원에게 대한 불이익조치 해결 위한 노력 필요
- (41) 국선노무사 수당 지급 지연 문제 해소 필요
- (42)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필요
- (43) 지청별 부실조사 건 확인 및 시정조치 필요
- (44)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안 보고 및 수사 의뢰 검토 필요
- (45) 법인 제도 및 파산 제도를 임금체불 변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조사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46)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필요
- (47) 외국인 노동자 대상 중간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실태조사 필요
- (48) 이행강제금 강제력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49) 고소·고발 사건 시정지시 관련 지침 개정 필요
- (50)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매뉴얼 개정 필요
- (51)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필요
- (5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신중한 검토 필요
- (53)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대책 수립 필요
- (54) 임금체불액 산정시 지연이자 포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55)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검토 필요
- (56)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57) 지역방송사 특별근로감독 적극 검토 필요
- (58)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정립 필요
- (59) 한국공항공사 인건비 낙찰률 문제 지도 감독 필요
- (60) 노동자 전자감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61)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로감독 필요
- (6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처리 필요
- (63)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필요
- (64)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 필요
- (65) 특별연장근로 제도 운영의 엄격한 관리 필요
- (66) 노동교육 확대 필요
- (67) 요양보호사 자체대근비 관행 특별근로감독 필요
- (68) 이석관리제 개선 필요
- (69) 야간노동 규제방안 마련 필요
- (70) 대지급금 변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필요
- (7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72)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73) 노동위원회 조사관 경력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 부여 검토 필요

【산업안전보건 부문】

- (1) 치명적 부상에 대한 별도 집계 및 데이터 축적 필요
- (2) 산업재해에 대한 종합감독체계 마련 필요
- (3) 위험도에 따른 구분 감독 체제 마련 필요
- (4) AI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
- (5)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6) 소규모 현장 인근 지자체·경찰청 운영 CCTV 등 활용을 통한 안전 일터 조성 필요
- (7) 근로자 안전조치 준수 인식 제고 및 의무 부과 등 방안 모색 필요
- (8) 작업중지권 행사 관련 용어의 명확성 제고 필요
- (9) 작업중지권 제도 개선 필요
- (10)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1)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 수립 필요
- (12)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13) SPC의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4)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종합적 근로감독체계 마련 필요
- (15) 끼임 관련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복 재질 개선 및 AI활용 필요
- (16) 공공부문 산재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17) 산재 과징금의 산재 예방 투자 환류 필요
- (18) 산재 과징금의 적정 수준 검토 필요
- (19) 잘못된 산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 (20) 안전규제 강화 보완책 마련 필요
- (21)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필요
- (2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 (23) 산재기금 지출예산 중 예방 관련 법정비율 상향 필요
- (24) 근로감독관의 산재 예방 관점에서의 운용 필요
- (25) 산재 재판 승소율 지역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 필요
- (26)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27) 산재 다발 업종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필요
- (28) 재해정보 공개 등 산재알림시스템 구축 필요
- (29) 백화점·면세점 폭탄 테러 위협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
- (30)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1) 위험성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32) 사업주 처벌 수준의 법정형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33)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시 제재 등 제도개선 필요
- (34)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필요
- (35) 동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설립 적극적 검토 필요
- (36)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 (37) 구광 청문회 논의사항 이행점검 필요
- (38) 장해급여 등 신청의 단순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정수수료 제도 등 도입 검토 필요
- (39)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감독 필요
- (40) 중대재해 수사 지연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4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 형평성 여부 등 검토 필요
- (42) 경주 노동자 질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43) 재해 발생 시 처리매뉴얼 등 시스템 개선 필요
- (44) 심야 배송 중단 요구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45) 위험의 외주화 방지 필요
- (46)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정책 강화 필요
- (47) 보건진단 명령의 실효성 확보와 산재조사표 제도 개선 필요
- (48) 니토옵티칼에 대한 산재 역학조사 필요
- (49) 산업안전 혁신 지원법 제정과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 설립 필요
- (50) 산재 보상금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업체 평가 개선 필요
- (52)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53)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재보험 감면 기준 확대 등 필요
- (54) 건설공사 등의 안전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55) 중대재해 발생 기업 병합조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56) 안전 디자인 개선 필요
- (57)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58)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필요
- (59)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시정 필요
- (60) 방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지침 강화와 개선 필요
- (61) 퀵서비스배달업 재해방지대책 마련 필요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 (1) 해외 취업 사기 관련 제도개선 필요
- (2)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3) 불공정 채용 근절 필요
- (4) 심우정 전 검찰총장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비리 관련 후속조치 필요
- (5) 정년연장 정책 관련 제도개선 방향 모색 필요
- (6)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제도 확보 필요
- (7)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 등 검토 필요
- (8) 유산·사산 여성의 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도 제고 위한 노력 필요
- (9) 워라벨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 사업 개선 및 사업 확대 필요
- (10) 청년일자리 내역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2) 중증 장애인 지원강화 필요
- (13)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복원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 (1)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 및 업무환경 개선 노력 필요
-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제신청제도 신설 검토 필요
- (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지급 지연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증액 필요
- (5) K-ADR 스쿨 강의료 기준, 강사 위촉기준, 성과평가 점검 및 개선 필요
- (6)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감독 강화 필요
- (7) 긴급이행명령 제도 활성화 필요
- (8)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AI 도입 필요
- (9)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상 격상 및 독립성 강화 노력 필요
- (10) 외국인 노동자 권리침해 사건 통계 관리 필요
-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접근성 제고 필요
- (12)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 (13)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와의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14) KBS 부당해고 관련 엄중 조치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 ◀

- (1) 독립적인 심의기관 마련 검토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1) 재심사 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
- (2) 산업재해 재심 승인을 개선 필요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1) 공익위원 및 근로자위원 비율 변경 검토 필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원저글로벌 단체협약 위반 사안 재검토 및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필요
- (2) 필립모리스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적극적 행정 이행 방안 및 공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직기강 확립 조치 필요

- (3) 콜센터 교육생 처우 근로감독 검토 필요
- (4) 한국공항공사 쟁의행위 적극 대응 필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한국니트옵티칼 산업재해 및 고용 문제 조사 및 보고 필요
-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을 중간 착취하는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
- (3) 신화다이나믹스 불법파견 및 노사대립 문제 대응 필요
- (4)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과로사 관련 재해사망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5) 채권문제로 인한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
- (6)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 근로 환경 특별근로감독 필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2) 한화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 적극적 수사 필요
- (3) 삼성SDI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동자측 의견 청취 필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최저임금 위반 합동조사 및 계도 필요
- (2)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 부당노동행위 수사 신속 처리 및 산업안전 관련 사고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한국전력 불법파견 사건 신속 처리 필요
- (2)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엄단 필요
- (3) 군산농협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감독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4) 제주 노인생활지원사 전자감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재조사 필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현대제철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재수사 철저 필요
- (2)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 처리와 직접고용 필요
- (3) KBS 부당해고 관련 엄중 조치 필요

▶ 근로복지공단 ◀

- (1) 산재 장애급여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2) 퇴직급여 충당금 미적립 문제 개선 필요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운용체계 개선 필요
- (4)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 직업복귀 지원체계 개선 필요
- (5) 근로복지공단 운영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필요
- (6) 산재보험 부정수급 점검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 필요
- (7)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필요
- (8) 산재 판정 및 소송 관련 업무 관행 개선 필요
- (9)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필요
- (10) 산재 특별진찰 효율화 노력 필요
- (11) 울산 산재병원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
- (12) 공단 직원 안전 확보 및 민원 대응 강화 필요
- (13) 산재병원 의료장비·인력 확보 필요
- (14) 판결로 지급 결정되는 청구권에 대한 안내 체제 마련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반복 및 노조 관련 부당노동 행위 등에 따른 기관장 책임 필요
- (2) 공공기관장 도덕성·책임성 확보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 해외취업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
- (4)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 소통 강화 필요
- (5) 국가자격 시험 검정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6)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위험성평가 장려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전면 확대 검토 필요
- (2)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필요
- (3)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체계 개선 필요
- (4)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강화 필요
- (5) 이동식 에어컨 보급사업 부정수급 대응 강화 필요
- (6) 이러닝 콘텐츠 무상 보급 필요
- (7) 건설·조선업 안전보건교육 체계 강화 필요
- (8) 산업안전보건 체험교육장 운영 개선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필요
-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적합 일자리 제공 필요
- (3) 금융·보험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 ◀

- (1) 고용보험기금 편취 사건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필요
- (2) 해외 취업 사기성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캄보디아 분교 추진 과정의 감사 및 사실관계 명확화 필요
- (2) 폴리텍대학 지역균형 캠퍼스 확충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3)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감사 결과 환수·징계 필요

(4) 연구용역 운영의 공정성 제고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금·부가금의 수준 현실화 및 정례 인상제도 도입 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구체적 자료 제공 필요

▶ 한국잡월드 ◀

(1) 잡월드 부당해고 처리 개선 필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1) 노동교육원 기능 강화 및 노조법 교육 준비 필요

3) 기상청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돌발가뭄 감시·예측 강화 필요 (2) 재생에너지 예측 정보 제공 필요 (3)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문자 확대 필요 (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확대 필요 (5) 난기류 기상정보 제공 개선방안 마련 (6) 인공강우 기술 발전 필요 【기상인력 관련 사항】 (1) 기상청 예보 인력 및 역할 확대 필요 【기상장비 관련 사항】 (1) 국산 기상장비의 활용성 제고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2) 기상전문기관 제도 활성화 필요 (3) 천리안위성 5호 사업 관리 철저 (4) 기상관측장비 보안 강화 대책 필요 (5) 슈퍼컴퓨터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 【기상행정 관련 사항】 (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 회수율 향상 필요 (2) 무분별한 기상 정보 콘텐츠 확산에 대한 대책 필요 (3) ODA 사업 관리 철저 필요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위원회의 체제 및 역할 재편 노력 필요 (2) 사회적 대화 중립성 확보 및 노사 협의 강화 필요 (3)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4) 일본식 계속고용을 한국식으로 수용할 방안 연구 필요 (5) 산업안전 관련 사회적 대화 확대 필요 (6)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 관련 역할 수행 노력 필요 (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책임 체계 명확화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대통령실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향후 부처 운영 성과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대통령실과 연계하여 명확히 관리할 것

(2) 환경정책 퇴보문제 개선 필요

- ▷ 지난 정부는 탄소 중립을 표명하면서도 산업부문 연도별 감축 목표의 무력화, 배출권의 과다한 무상할당, 기후대응담 추진,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 직매립 금지 정책 준비 미흡 등 자원순환정책 후퇴 등 환경정책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킨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3) 에너지 정책 퇴보문제 개선 필요

- ▷ 지난 정부는 제10차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였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재생에너지를 이권 카르텔로 몰아 감사 및 수사와 출력제어·접

속제한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과 투자를 위축시켜 RE100 이행과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으므로,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및 숙의 기구 구축 필요

- ▷ 국가기후, 전력 관련 회의체의 투명한 공개와 기후시민회의 등 숙의 공간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번 NDC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숙의하고 모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복원 필요

- ▷ 현재 4대강 관련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통이 단절되었고, 민간 참여를 독려해야 할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어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복원할 것

(6) 수도권 3-1 매립지 사용 종료(2025년) 관련 재협의 필요

- ▷ 수도권 3-1 매립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바(2015년 합의), 사용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

(7) 생활환경 관리체계 복원 및 전담조직 신설방안 검토 필요

- ▷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환경과가 폐지되어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과 같은 국민생활과 밀착된 기능이 각 부서로 흩어졌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환경 관리체계 복원 및 전담조직 신설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8)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관련 제출 자료 누락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 한국수자원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콘퍼런스 참석 결과보고서와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며, 특정 기업이 국회 제출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료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MOU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

(9) 산하기관 직원 비위행위 징계 및 인사 윤리에 대한 감사 필요

- ▷ 국립생태원은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직원을 승진시켰으며, 사건 발생 1년 1개월이 지나서야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 검증 및 복무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인사 윤리 및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해 정밀 감사를 실시할 것

(10) 산하기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 처분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 최근 법원 판결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납품업

체에 내린 등록 정지·취소 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내부 규정에 의한 제재 처분의 적법성 논란이 우려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임의적 제재 처분 실태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

(11) 원자력환경공단 조직윤리 개선계획 마련 필요

- ▷ 원자력환경공단 징계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피해자 진술권과 보호절차 전면 재정비를 포함한 조직윤리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12)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지침 마련 필요

- ▷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사가 변경될 때마다 노동자의 고용 승계가 불안정하고 근무 연수, 퇴직금 등 근로 조건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의 경우 단순노무직 임금 기준을 적용받아 처우가 열악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시설 노동자의 안전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 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 조건 승계를 권고하도록 하고, 임금 산정 기준 현실화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13) 산불 예방 및 친환경적 복원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 필요

- ▷ 환경 보전과 산림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

후에너지환경부는 산림청과 협업하여 산림지대 내 간선도로 및 임도 개설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야간 헬기 운용 등 산불 진화 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청·국방부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할 것

(14)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지침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규정 개정여부 확인 및 개정 필요

-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규정 개정 여부를 확인·취합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물관리부문】

(1)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 등의 과학적 재평가 필요

- ▷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전제로 한 토목사업이었고, 막대한 재정·환경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왜곡된 추진과정과 정책 책임을 과학적으로 재평가할 것

(2) 4대강 보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 보 개방으로 인한 소수력발전 손실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질의한 바 있는데, 경영상 판단영역에 해당하여 배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퇴

진시키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을 배임으로 몰아 정치적 책임을 씌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3) 4대강 수질 개선에 대한 과학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 ▷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녹조 발생 빈도, 독소 농도 등 종합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 4대강 재자연화 및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 ▷ 지난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위와 수자원공사의 배임 논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4대강 재자연화 및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

(5) 속도감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필요

-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6)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자원 공급 저하 문제 해결 필요

- ▷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자원 공급 저하로 금강 백제보 인근을 중심으로 대체관정이 대규모로 집중 설치되었으며, 취·양수장 180곳에 수자원 공급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체 취수 대책의 사전 구축 및 관정 설치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

는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7) 보 개방과 취수·양수 시설 문제

- ▷ 16개 보 인근 180개 취수·양수 시설이 전면 개선 대상임에도 예산과 사업 추진 속도가 미흡하므로, 보 개방과 취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

(8) 세종보 기본계획 수립 시점 명확화 필요

- ▷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된 금강수계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된 것임에도, 해당 계획이 중간에 철회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세종보의 정책적 기초가 된 자료를 명확히 확인할 것

(9) 보 개방 및 해체 필요

- ▷ 세종보 개방으로 유속 증가, 녹조 감소, 생태 회복이 확인된 사례, 보 유지보다 해체가 더 경제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므로, 금강 및 영산강 보의 경우에도 보를 개방 또는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세종보 개방에 따른 전력생산 및 재정손실 문제와 재가동 여부 판단 필요

- ▷ 세종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0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10억원의 수익을 발생하였는데, 보 완전 개방 이후 소수력발전이 중단되어 약 90억원 이상의 전력수익 상실이 발생하

였고, 보 건설비(241억원), 수리비(35억원), 소수력발전소 건설비(91억원)을 합치면 수백억원의 공공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종보 완전 개방에 따른 협의체 구성, 지역 주민 의견, 수자원 안정성, 기후·환경 영향 등 별도 평가를 진행할 것

(11) 기후대응댐 사업 재검토 추진 필요

- ▷ 물관리기본법이 아닌 수자원법을 근거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법적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는바, 기후대응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 홍수 예방을 위해 연천의 아미천댐 등 댐 건립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건립을 추진할 필요
- ▷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로, 현재 7개는 백지화되었으나 나머지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역 실정에 따른 수자원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

(12) 기후대응댐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접근 필요

- ▷ 기후대응댐(신규댐) 중 지천댐은 충청지역 홍수 또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지난 정부에서는 댐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현재는 추가 검토 및 공론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대응댐 추진 시 국가 백년지계를 보고 과학적 근거와 양심에 따라서 신규댐 문제에 접근할 것

(13) 기후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중단 관련 정책 신뢰성 문제 개선 필요

- ▷ 기후대응댐에 대해 정밀한 재검토를 약속한 뒤 충분한 조사 없이 7개를 중단하고, 7개를 재검토 결정한 것은 절차적·정책적 신뢰를 훼손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14) 기후대응댐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식회의가 없고 회의록이 1건도 없는 등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2030 하천유역계획에 2050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근거로 사용하여 근거로 사용하여 목표년도('30년)와 다른 ' 50년 물수요를 사용하는 등 건설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본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전용 댐, 농업용 저수지·정수장 확충, 하수 재이용, 습지복원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15) 댐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안 검토 필요

- ▷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6) 댐 수몰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량 건설 등 대책 마련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고향 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교량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한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7)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 필요

- ▷ 지하수 유출량 한도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는 반드시 지하수 유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유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18) 노후 상수관 정비시 재정자주도 고려 필요

- ▷ 싱크홀 문제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관 교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9) 서울시 지반위험지도 공개 필요

- ▷ 싱크홀 문제를 포함한 지반위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할 것

(20) 조류경보제 개선을 위한 조류독소 기준 법제화 필요

- ▷ 조류경보제에 남조류 세포수 외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하는 조류경보제 개선안이 시범운영 중이므로,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
- ▷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 세포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마이크로시스틴을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독소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
상레저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권·안전권 확
보를 위해 상수원 구간뿐 아니라 친수공간에서도 광범위하게 시료
채취를 할 것

(21) 녹조 독소의 인체 위해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등 녹조 독소의 위해성이 이미 알려진 만큼, 민·관·학 공동조사의 중간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고위험 지역의 인체·농수산물·공기까지 포함한 종합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22) 호수공원 녹조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 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상수원 위주로만 조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호수공원도 조류 측정 지점에 포함하고, 지자체 및 수면 관리자와 협력해 녹조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23) 낙동강 녹조 피해 조사 연례적 실시 및 농식품에 대한 녹조 유해성 조사 필요

- ▷ 낙동강 녹조 발생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한 조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낙동강 하류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한 녹조 함유 여부 및 유해성을 국가기관이 권위 있게 조사하여 농민들에게 결

과를 제공할 것

- ▷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녹조가 장기간 지속되며 실제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가 검출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수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저감을 위해 취·양수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 녹조 피해가 집중되는 경남·부산 등 하류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보별·지역별 단계적 개선계획 및 예산 확보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
-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녹조가 사람이나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를 전문적·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기존 합의 사항을 고려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필요

- ▷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하여 취수원을 낙동강유역위에서 검토 중이던 안동댐이 아닌 기존 해평취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역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바, 새로운 안을 검토하기 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하는 등 기존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 변경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장기적 정수 비용 등 경제성 평가를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 ▷ 대구시 취수원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류수나 강변여과수를 통한 취수가 쉽지 않고, 새로이 혼란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와 안동시가 동의한 안동댐안(안동댐의 원수를 취수

하는 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25) 물산업클러스터 통합 지원 필요

-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지원기관의 기능 분산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26) 우크라 재건사업 MOU 추진 실효성 및 예산 낭비 전면 재검토 필요

- ▷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 성과 과장 여부 등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할 것

(27)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 가뭄 취약성이 높은 영동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과도한 물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

(28) 분산형 수자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강릉 가뭄은 단일 저수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발생한 사례로, 지하수 확보 및 유수율 개선 등 분산형 수자원 관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령댐 건설 이후 지방상수도 폐쇄 사례처럼 댐 중심 정책은 지역 대응력을 약화시키므로, 기후대응댐 건설은 재검토하고 지역 맞춤형 수자원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29) 강릉 단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 강릉 단수사태는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 관리 주체의 분산과 연계운영협의회 미운영 등으로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바,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것

(30) 초순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 강화 필요

- ▷ 국내 초순수 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 자립을 지원을 위해 수도사업자의 지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재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1) 농업 용수를 위한 홍수조절 및 소하천 관리 컨트롤 타워 필요

- ▷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홍수조절, 각 소하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특수기간만을 정하는 형태로라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는 등 센터 또는 싱크탱크,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고, 예천 용두천댐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재판단하여 보고할 것

(32)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 점검 필요

-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진척이 늦고, 특히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이 예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

(33) 낙동강 유역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

- ▷ 한강 유역에 비해 낙동강 유역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낙동강 유역 등 취약 지역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도입을 위해 국비 지원 기준을 복원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34)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물관리 일원화 측면의 연구·검토 필요

- ▷ 물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두 곳이므로 물관리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역할 분담을 검토할 것

(35) 환경조사 위해성평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용산어린이정원을 ‘정원’으로 한 것과 환경공단과 주한미군이 공동 수행한 환경조사 위해성 평가에서 해당 일부 구간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검토하여 폐쇄 또는 오염원 처리 후 재개장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6)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검사 이행을 종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단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나 1회만 받아본 곳이 67.2%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수질검사 이행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7)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설정 기준 개선 및 전수조사 실시 필요

- ▷ AI 홍수 예측의 핵심인 수위관측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서울 신대방 1교와 같이 하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세굴(洗掘) 가능성이 없는 구간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영점표고를 낮게 설정함에 따라 실제 수심보다 수위가 과다 계상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
- ▷ 현행 반기별 정기점검은 수위표와 데이터센터 간 단순 오차만 확인할 뿐 기준점 설정의 적정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I 홍수 예측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영점표고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점검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수위관측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38)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제도의 준비 부족 개선 및 지자체 지원책 마련 필요

- ▷ 대다수 지자체가 악취 민원, 부지확보 난항, 예산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고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의원실을 통해 전달된 17개 시·도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39) 바이오가스 미활용(단순 연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산업 화 전환 필요

- ▷ 현재 바이오가스 업무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 산업이 아닌 단순 폐기물 처리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원순환국 소관으로 조직 개편 및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40) 상수원보호구역 내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1977년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전 설치된 부산 소재 골프장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시설에서 금지된 중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수질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잔류 검사 및 수질 조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41)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배면 매립토 확보 방안 개선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필요

-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에 용존산소 농도 2mg/L 이하의 저산소층이 형성되어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새만금호 내 준설이 오염물질 재방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인근 군산항·장항항은 퇴적 문제로 매년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

후에너지환경부는 새만금호 내 준설을 지양하고 항만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여 경제성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이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42) 본류 관리 강화 필요

- ▷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본류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낙동강 본류의 석포제련소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43) 석포제련소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이전·폐쇄 등 근본적 해결 필요

- ▷ 낙동강 상류이자 태백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반세기 이상 운영되며 지속적으로 오염을 유발해 온 점은 국민 식수원 관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며, 현재 경상북도 TF를 통해 이전·폐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바, 더 이상의 미봉책이 아닌 이전 또는 폐쇄를 포함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
- ▷ 올해 말까지 처리 완료하기로 한 제련 잔재물이 아직 50%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제련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적치된 상태로 비가 오는 경우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것
- ▷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 시 부과된 조건 중 하나인 오염된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러한 토양오염은 지

역 차원을 넘어 국민 식수원 안전과 직결된 중앙 차원의 사안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44)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후 콘크리트 맨홀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 전국 약 19만 8000개의 콘크리트 맨홀 중 상당수가 설치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부식·파손에 따른 장마철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교체·보수는 지자체 하수도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안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통학로, 보행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요소를 등급화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차별 교체 목표와 재원을 배분할 것

(45)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 현재 전국 472건의 토양오염 정화명령 중 39건이 조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화명령의 이행비용보다 적은 벌금만 납부한 채 재명령을 반복하여 부과받는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46) 한강버스 사업의 환경영향 및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 검토 필요

- ▷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고, 사업 주체가 허가권까지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제도적 모순과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므로,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환경영향 검토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

(47)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경영이 되도록 관리 필요

- ▷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10.1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 중 4.5조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경영평가에 4대강 사업 재정역량을 반영하고, 4대강 부채상환 적극 추진 및 재무 건전성 개선 등 책임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48) 강릉 단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 강릉 단수사태는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 관리 주체의 분산과 연계운영협의회 미운영 등으로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바,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것

【자연보전부문】

(1) 동물복지 관련 시행령 정비 필요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야생동물의 허가제 전환으로 방치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접촉을 금지한 모법에 반해 시행령 단서조항이 교육 목적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

(2)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고보조금 구조 개선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이 진정한 국가 책임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제출할 것

(3)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책 마련 필요

- ▷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법원에서 문제로 지적되며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동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위험 저감, 비행 절차 개선,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등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할 것

(4) 곰 사육 종식에 따른 사육곰 보호 방안 마련 및 민간협력 강화 필요

-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부터 민간 곰 사육이 금지되었으므로, 사육 곰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 민간에서의 곰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사육곰을 담당할 보호소를 신속히 설치하여 사육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5)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관련 국민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정확한 추적·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국내외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 안전을 위해 각종 중 복원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책 전환 검토가 필요

함.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각종 맹수 복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고할 것

【대기환경부문】

(1) 메틸브로마이드 대기 배출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

- ▷ 고독성 신경독 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가 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 정화 없이 주택가·학교 인근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훈증·정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2)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 관련 제도개선 필요

- ▷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원격 광학식 측정방식(DIAL, SOF)은 사업장이 배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또는 부지 경계를 따라 굴뚝 배출가스를 외부에서 측정하여 확산, 누출을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접근 없이 원격으로 배출농도, 배출량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EU 회원국들은 이미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로드맵과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3) 납 2차 제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전수조사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필요

- ▷ 폐납산배터리를 재활용하는 2차 제련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전국의 납 2차 제련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고령군·함안군 등 공장 인근 주민들의 납 노출 및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

(4)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 확보 필요

- ▷ 대구 염색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성과는 있었으나, 아스콘 공장과 같이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독립된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히 2024년도 관련 예산과 지원 업체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하여 정책 후퇴가 우려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수행할 것

(5)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시설의 실효성 확보 필요

- ▷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90%에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저감시설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6)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필요

- ▷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이 매우 높고,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소성로가 다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 대비 완화된 배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유럽 등 주요국 역시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수립할 것

(7)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중대형 자동차에도 적용 필요

- ▷ 현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3.5톤 미만의 자동차 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 그리고 16인 이상의 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원순환부문】

(1) 텀블러의 지속적 사용 대책 마련 필요

- ▷ 텀블러가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량 생산된 이후 활용도가 낮아 단기간에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텀블러 소비구조가 환경보호보다는 과잉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산된 텀블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2) 플라스틱 감량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일회용컵 보증금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다회용기 보급 지원 등 자원순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플라스틱을 원칙적으로 감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완 필요

- ▷ 멸균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수거 이후 재활용 단계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종이팩·멸균팩의 수거·선별·재활용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 인프라 확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 비닐장갑 등 일회용품 원천 감량 추진 필요

- ▷ 셀프 주유소에서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비닐장갑이 현재까지도 비치되어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나, 위생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재활용도 되지 않고 폐기되는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치 관행을 개선하고, 탈플라스틱 정책 실현을 위해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품에 대한 근본적인 감량 대책을 마련할 것

(5) EL724 인증제도 개선 필요

- ▷ 생분해 플라스틱 등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인 EL724와 관련된 재활용 정책은 정책 신뢰성 상실(장려▶중지▶유예▶2028년 추후 결정)로 국내 플라스틱 산업계에 피해가 받

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L724 관련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

(6) 의류 재고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국내 패션업계 대기업들은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 톤의 의류 재고품을 소각하고 있고, 소각 과정에서 탄소,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외 저소득층 대상 기부,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 중인 의류환경협의체가 연구원 및 국가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류업체와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류업체들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상의 문제 개선 필요

- ▷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크린넷에서 최근 5년간 19건의 화재, 지반침하,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 크린넷의 관리를 지자체에만 일임할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방치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악취·고장·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

(8) 빨대 재질별 전과정평가(LCA)의 정확한 이행 및 재질 선택의 시장 자율성 보장 필요

- ▷ 종이빨대만이 친환경적이라는 편향된 메시지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질별 LCA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재질을 강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친환경 대체재를 시장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정책을 개선할 것

(9) 식품 포장재 등 실질적 폐기물 원천 감량 필요

-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방 자율 시행 전환을 계기로,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량을 빨대와 같은 소규모 품목보다는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식품 포장재 등의 원천 감량에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할 것

(10) 과대포장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필요

- ▷ 최근 5년간 장난감류 등 특정 업종의 과대포장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나,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순히 지침만 시달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과대포장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로서 과대포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접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 상향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1)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통계의 오류 시정 및 실질적 통계 산정 체계 마련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95.7%)은 물질 재활용(약 90%)과 에너지 회수(약 5%)를 포함한 수치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소각 처리되는 재활용 잔재물조차 42%가 물질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통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데, 이는 재활용 업체로 반입만 되면 최종 처리 과정 확인 없이 재활용 실적으로 산정하는 현행 통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2023년부터 도입된 에너지 회수와 물질 재활용의 분류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체의 반입량이 아닌 최종 처리 단계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

(12) 일회용품 규제 정책 변경에 따른 종이빨대 업계 피해 구제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필요

- ▷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공식화했다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유예기간 없이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에 수십억 원을 투입한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매출 급감, 인력 감축, 파산 위기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 변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단순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넘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판로 개척 지원 등 피해 기업의 도산을 막고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13)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방지 필요

- ▷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88종의 폐기물이 원료·연료로 사용되는데,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6가크롬 및 각종 중금속 노출 위험이 발생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유럽, 영국, 중국 등에서 6가크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립할 것

(14)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필요

- ▷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 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할 것

(15)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술 개발 기능 강화 필요

-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정관에 기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2015~2023년 간 수행된 연구과제 71건 중 기술 개발 성과가 없으며, 연구 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인건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구조의 기형적 운영 행태를 보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관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기술 개발 중심의 예산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16) 폐기물 소각 기반 에너지의 재활용 분류 문제 개선 필요

- ▷ SRF 및 바이오매스와 같이 폐기물 또는 목재 부산물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사실상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또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정책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 연소 기반 에너지의 정책적 분류 기준과 재활용 통계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회수와 물질 재활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환경보건부문】

(1) 살생물제품 전환에 따른 승인 지연 대응 필요

- ▷ 2026년 1월부터 살균제·살충제·기피제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나, 승인 신청이 몰리고 평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상당수 제품의 유통 차질이 우려되므로, 승인 지연시 유예 연장 방안 및 평가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 유해성미확인물질 항목에서 피부부식성 물질 제외 결정 재검토 필요

-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유해성미확인물질 항목에서 피부부식성이 제외되어 사고 예방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재검토 및 재심 요청을 추진할 것

(3) 부적합 해외 직구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국내 플랫폼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실질적인 차단을 위해 대형 포털·유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4) 온라인 유통 불법 생활화학제품 차단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위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단순한 판매자 처벌을 넘어 온라인 유통사에 유해 제품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

(5) 휴업 주유소의 사실상 방치 관련하여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 토지정화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최근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 처리 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종결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으므로, 구제 대책을 병행하거나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7)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2021년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마감재 납 함량 기준이 강화되고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면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8) 과불화화합물 재고 파악 및 대체 물질 전환 가속화 필요

- ▷ 발암 가능성과 인체 잔류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퇴출 추세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포소화학적 용도에 한해 사용 연장을 받은 상황이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포말 소화약제 등에 과불화화합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방, 항공, 정유 업계 등이 보유한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체 물질 개발 및 조기 전환을 통해 사용량을 감축할 것

(9) 어린이 환경성 질환 증가 원인 규명을 위한 전국 정밀 실태조사 및 아동 권리 관점의 환경보건 지표 검토 필요

- ▷ 최근 5년간(2020~2024) 13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이 1.77배, 비염 유병률이 1.41배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기준 병원

을 찾은 어린이가 약 220만 명에 달하는 등 환경성 질환이 일상화되고 있고, 특히 경북 상주(천식 41%), 충남 서산(비염 58%) 등 특정 지역의 유병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폐광산,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나 명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환경성 질환 취약 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검토할 것

(10) 생식독성 물질(TPO) 함유 젤네일 유통 차단 및 해외 금지 물질의 신속한 국내 적용 체계 마련 필요

- ▷ 유럽연합(EU)에서는 생식 독성 및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 생식독성물질(TPO;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젤네일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TPO 함유 젤네일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금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절차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어 퇴출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즉시 연동하여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 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 필요

- ▷ 아리셀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 중요성이 커졌으나, 화학물질안전원의 지자체 대응 역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과반을 넘는 등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조례가 있어도 지역 대비체계 운영이나 실무자 배치가 부실한 경우

가 많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 실태를 조사하고, 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기후부문】

(1) 선진국 수준의 2035 NDC 목표 설정 필요

- ▷ 국제법상 책임과 우리나라의 기후약당 오명을 감안하여 한국의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책임있고, 실효적으로 설정할 것

(2) 현실을 반영한 목표 지향적인 NDC 설정과 탈탄소 산업 정책 복원 필요

- ▷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매우 부진하여 2030 NDC 달성이 사실상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전기차,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 등 정책을 축소·지연함에 따라 탈탄소 경쟁력이 약화된 문제가 있으므로, 탈탄소 산업 정책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강구할 것

(3) NDC 목표 설정시 산업 경쟁력과 현실성 고려 필요

- ▷ 2035년 NDC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기술·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

- ▷ 2029년도의 산업 부분 배출 목표가 약 2,110만톤 초과하여 설정되는 등 산업 부분 탄소 배출 예상량이 너무 높게 산출되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2035 NDC 목표를 수립할 것

(4) 2050 NDC와 불일치하는 LNG 전환 계획 수정 및 폐지-건설 시차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 LNG 발전소의 통상 수명이 30년임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 중인 대체 건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되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과 대체 설비 준공 시점 간 2~3년의 격차로 인해 적자 누적 및 인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순한 1:1 대체 건설 방식이 아닌, 2050 NDC 달성 가능성과 전력 수급 상황, 고용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 및 대체 건설 시기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것

(5) NDC와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이행경로 구체화 및 법제화 검토 필요

- ▷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의 에너지 믹스 수치가 상이하여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었고, 향후 수립될 2035 NDC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에도 기준 연도 차이로 인해 목표 불일치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두 계획 간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고 정합성을 확보할 것
- ▷ 현재 NDC는 총량적인 감축률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연도별·부문별 이행경로가 부재하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검토하여, NDC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원별 설비용량, 발전량, 예상 배출량 등을 포함한 연도별 감축경로 명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NDC 목표 수립과정에서의 기술·재정적 뒷받침 강화 필요

- ▷ 기술작업반에서 검토한 5개의 감축 시나리오 중 일부만이 공개 토론 과정에서 제시되고, 각 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검토 자료가 국회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NDC 목표를 상향 설정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술개발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예산은 일본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므로, 상향된 NDC 목표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것

(7) 기후위기 임계점 경고와 대책 마련 필요

- ▷ 전세계 산호초의 80%가 백화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산업화 이후 사실상 1.5℃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정부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후퇴 등을 고려할 때 인류 생존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기후정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국립으로 기후위기체험센터를 건립할 필요

- ▷ 기후를 단순히 위기만 느낄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느끼고 행동

으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고,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이런 체험형 기후 교육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준 높은 체험형 기후교육 인프라 건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9)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청정 에너지이자 공짜 에너지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친환경과 저비용 프레임 뒤에 있는 비용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임. 기후환경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과 기업에 전가 되는 것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기후환경요금 수입금의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배출권거래제(ETS) 4차 계획 수립 시 산업계 국제 경쟁력 고려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1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배출권 구매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제 부문의 국제 경쟁력 고려 원칙에 따라 급격한 유상할당 확대가 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것

(11) 유상할당 배출권의 단계별 확대 필요

- ▷ 시멘트 등 내수중심 업종까지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유상전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세에 역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2)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조정 필요

- ▷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보면 산업 부문에서 배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이 40%인데, 국가 배출의 14% 밖에 안되는 수송 부문의 예산 비중도 38%로 거의 유사한 수준임. 또한 2025년 4조 3,000억원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 대부분은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2조 2,600억원),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9,284억원) 및 노후 상수도 정비(3,700억원)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후 테크 육성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산 배분을 조정할 것

(1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리 강화 필요

- ▷ 중앙정부는 감축 사업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서울·경기·경남은 배출·감축·중립·잠재영향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는 등, 국가 예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산 효율성도 낮은 상황이므로, 프랑스의 사례처럼 시민 감시·평가구조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14) 기후보험의 실질적 도입 및 재정 뒷받침 필요

- ▷ 이상기후 빈도·강도가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근로자의 생명·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기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기후대응기금 내 연구용역비 3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2026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만큼, 기후보험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공공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녹색부문】

(1) 교통전환의 대상 다변화 필요

- ▷ 전기차 중심을 넘어 이륜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실제로 수요가 많고, 체감효과가 큰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통전환의 대상을 다변화할 것

(2)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제작사 가격 인하 유도 필요

- ▷ 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 450만 대 대비 현재 보급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격차(약 1,000만 원)를 해소하기 위해 잔여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 미국 등 해외 시장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전기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차량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소차의 경우 예산 삭감을 재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보급을 촉진할 것

(3) 전기차·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국내 산업 보호 필요

- ▷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2030년 450만대) 대비 실제 보급 실적(86만대)이 크게 미달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됨.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바, 보조금 차등 기준 강화 및 국내산 전기차·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효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

(4) 전기차 배터리 안전정보 활용 제도 개선 필요

- ▷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를 활용하면 화재 예방이 가능함에도 현행 지침상 정보 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기준을 개선하여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전기차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것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종합 대책 필요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및 인프라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인 개선 방안을 다시 수립할 것

(6) 전기 저상버스 보조금 차등지급체계 도입 관련 관계부처 협의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 기술력, 사후관리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의 전기 저상버스 보조금은 성능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저상버스 보조금에도 차등 지급 체계가 도입되도록 할 것

(7) 학교 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방치 문제 해결 필요

- ▷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수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교문 미개방 등 학교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시설 전기차 충전기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2035~2040년)과 관련한 발언이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정부 내부 검토 없이 제시되면서, 완성차·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로드맵을 먼저 마련할 것

(9) 녹색기업 지정 제도의 재검토 및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

- ▷ 녹색기업 지정 제도가 통합환경허가제 확대에 의한 최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적용으로 최고 수준의 저감 기준을 따르고 있어 차별성이 약화되었고, 지정 혜택 대비 사고 발생 시 리스크가 커 기업의 참여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어 기업 전체의 ESG 경영 흐름과 괴리되고 있으므로, 제도를 재검토하여 녹색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 중심의 환경관리형과 기업 중심의 지속가능경영형으로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또한 검사 의무 면제와 같은 기존의 소극적 혜택을 넘어 금융·조세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녹색기업 제도의 존립 근거와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10) 석탄화력발전 폐지 후 대체 건설 사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 현재 발전 5사가 석탄화력발전 폐지 후 대체 LNG 발전소 건설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복 투자, 경제성 저하, 낮은 이용률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에너지 전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

(11) 철강 등 주력 산업 보호 및 일자리 대책을 동반한 현실적인 감축 로드맵 제시

- ▷ 철강,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국내 경제의 핵심이자 일자리의 보고이나, 무리한 탄소 감축 목표는 이들 산업의 위축과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탈탄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

되,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점, 산업 경쟁력 유지 가능성, 고용 전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속도와 범위 내에서 감축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

(1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및 노동자 참여 보장 필요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발전전환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배제되거나 의견 청취가 전무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시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의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

(1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하청·자회사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직무 전환 대책 마련 필요

-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발전 5사 정규직의 재생에너지 직무 전환 교육 실적은 12%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협력사 및 자회사 노동자는 전환 배치가 불가능해 대량 해고나 임금 삭감 등 생존권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타 업종 단순 재취업 수준의 미봉책이 아닌, 발전 노동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주도의 고용 승계 및 전환 배치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14) 발전사 우드펠릿 원산지 관리 소홀 및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 폐목재 펠릿(REC 가중치 0.5)과 미이용 산림자원(REC 가중치 최대 2.0)간의 가격 및 보조금 차이를 악용하여, 저가의 수입산 폐목재 펠릿을 국내산 미이용 산림자원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불법 행위 정황이 있고, 발전 5사의 원산지 관리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15) 목재펠릿의 재생에너지 인정의 문제점

- ▷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어 REC 가중치 및 각종 보조금·전환지원금이 부여되면서,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오히려 석탄발전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열량 대비 탄소 배출량, 산림 훼손, 해외 수입 의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정 및 REC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단계적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

- ▷ 국민과 산업계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배출 순위뿐만 아니라 실제 배출 비중, 에너지원별 비용 추계, ESS(에너지 저장장치) 포함 여부에 따른 통계 차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17)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 필요

- ▷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인 CCUS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 및 실증 지원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수소·에너지부문】

(1) 도시형 태양광 확대 대책 필요

- ▷ 수도권 전력자급률이 65.4%이고 재생에너지 자급률이 1.8%에 불과한 상황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송전선로, 변전소 확충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형 태양광 사업계획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산 태양광 패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 필요

- ▷ 중국이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구입이 어려운 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정부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것

(3) 태양광 부품 국산화 및 보안관리 강화 필요

- ▷ 태양광 모듈의 단순 조립이 아닌 실질적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일 부라도 이루어진 경우에 국산으로 인증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태양광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은 공공사업 납품 장비부터 보안 검증과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보안관리를 강화할 것. 이를 포함하여 NDC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기술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4)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과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으로 OECD 평균(3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30 또는 2035 NDC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복잡한 인허가, 이격거리 규제, 국방부 등 부처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송배전선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발전이익을 장 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등 검토 필요

- ▷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70TWh(전체 발전의 30~3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소 130GW 심지어는 200GW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 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3배가 필요하여 입지 확보가 최대 난제인 점을 고려할 때 방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것

(6) 수도권 재생에너지 전력확보를 위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필요

- ▷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이 낮고, AI 선도산업, 전기차 확대 등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직결 송전망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넓은 부지가 있는 접경지역을 활용한 경기북부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 분산에너지특구 조속 지정 필요

- ▷ 울산 등에서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이 에너지위원회 재구성 지연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지역 데이터센터 운영 등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8) 재생에너지 R&D 복구 필요

- ▷ 지난 정부 출범 이후 R&D 예산 축소로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가 2024년에 대거 중단되었고, 협약 변경으로 실질적 연구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력 이탈과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생에너지 R&D 재가동과 복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9)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 ▷ 암모니아 석탄 혼소는 탄소 배출 감축효과가 미미한데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혼소 발전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10)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전면 재검토 필요

- ▷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역행하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

(11) 재생에너지 시스템 비용 반영 및 정확한 비용 추계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비용 산정 시 균등화 발전 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만을 근거로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IEA, OECD 및 전력거래소가 지적하는 전력계통 통합비용, 예비력 확보, 계통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비용을 간과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균등화 발전 비용과 같은 지표 산정 시 ESS 등 추가 설비 비용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12) 매립시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조정 및 제도 개선 필요

- ▷ 산업단지 내 매립지는 전력 소비처와 인접해 송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환경 훼손이 없는 최적의 입지이고, 매립지를 공공시설로 인정하거나 이에 준하도록 REC 가중치를 조정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침하 및 침출수 관리 등 기술적 보완 대책을 포함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13)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재생에너지 재투자 확대 및 K-RE100 이행수단 다변화 필요

- ▷ 기업들이 K-RE100 이행수단으로 가장 손쉬운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재투자 비율이 조성된 기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기금의 미집행분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창출할 것
- ▷ 단순 비용 지불 방식인 녹색프리미엄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수단을 다변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14) 기후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히트펌프 보급 대책 마련 필요

- ▷ 히트펌프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바닥을 데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맞지 않아 난방 체감도가 떨어지고 건조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혹한기에는 실외기 결빙 등으로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고장이 잦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보급계획 수립 시 축열조 설치 등 온돌 난방과의 기술적 연계성, 겨울철 기후 특성, 전기요금 및 전력 피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주거 환경에 적합한 보급대책을 마련할 것

(15)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의 국제 기준 부합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복원 필요

- ▷ 지난 6월 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은 정부가 4년간 연구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생물다양성 보호 기준이 미흡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 설문 및 청문 조사 절차마저 삭제되어 주민 수용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삭제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각 복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성 평가 지침을 개정할 것

(16)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 조기 완료 필요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반면, 멸종위기종 서식지·철새도래지·해양포유류 경로 등 필수 환경정보를 담은 입지정보망의 당초 구축 완료 시점은 2026년 8월로 되어 있어, 법 시행 초기 정보 부재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 갈등이 우려되므로, 입지정보망 구축 용역을 법 시행 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17)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풍력 허가 과정의 안전성 재검토 및 발사체 낙하물 위험 대책 마련 필요

- ▷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 허가가 진행 중이나, 국방부 및 항공우주연구원이 설정한 비행·낙하물 제

한 구역 내에 풍력 발전 시설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 사고 위험이 제기되었고, 향후 민간 발사체 등으로 발사 빈도가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연료통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 허가된 풍력 단지의 입지 적정성 및 안전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우주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8)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지원 확대 필요

- ▷ 발전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축소함에 따라 현재 재생에너지의 90%를 민간이 점유하고 있어,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
- ▷ 민간 주도의 태양광발전의 경우 모듈의 국산화 점유율이 2022년 68%에서 2024년 41%로 하락한 반면, 공공 주도의 풍력발전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79%까지 증가한 점을 볼 때,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신기술 개발 등의 정책을 강구할 것

【전력부문】

(1) 발전공기업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에너지 체계 개

편, NDC 달성,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연계되어야 하며, 갈등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가 전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접속제한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

-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의 근본원인은 화력발전 중심의 계통운영에 있고,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과 ESS 확대 등 제도·기술적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체계를 구축할 것

(3)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

- ▷ 여론조사 결과 에너지 지산지소에 대해 83%가 찬성을 하고 있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별 또는 작은 공동체별로 자립과 자치의 원칙에 기반한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로 정책을 설계하고, 줄속적으로 결정된 용인 클러스터 단지를 전면 재검토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단지 입지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 및 적극적인 수요관리 필요

-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 및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남동발전 배열회수보일러 입찰 관련 감사 필요

- ▷ 남동발전 배열회수보일러 입찰 관련 고성 복합 입찰과정 및 분당 복합 입찰방식 변경 경위에 대해 감사하고 입찰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 ▷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전력기금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7) 유연 접속 확대 및 석탄가스발전소 최소발전용량 하향조정 필요

- ▷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감소를 위해 유연 접속을 확대하고 석탄가스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 준비 철저 필요

- ▷ 2026년 예정인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9) 계통한계가격(SMP)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한국전력공사 적자 지속, 민간 발전사의 원가보전으로 인한 수익 구조 왜곡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SMP(System Marginal Price)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블랙 스타트(Black Start)
대응을 위한 복합 화력 대체 방안 마련**

- ▷ 현 정부의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변동성이 커 블랙 아웃(Black Out) 발생 시 전력망을 복구하는 블랙 스타트(Black Start) 상황에서 즉각적인 가동이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석탄 및 복합화력발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기후 위기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탈석탄 정책 시행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복합화력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

(11)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의 객관성 확보 필요

- ▷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장기 비용 추계 보고서가 부재하며,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회의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어 정부 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LCOE(균등화발전비용) 외에 시스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확한 비용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

(12)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필요

-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사업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의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에 전력망 설치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현 구조는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

(13) 전력망 입지 선정 시 주민 수용성 및 소통 강화 필요

-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반대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자체보다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력망 확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 건강·안전 우려와 지역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실질적인 주민 소통을 강화할 것

(1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수의 전문가가 장기간 참여하여 수립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사이에서 존중·재검토·백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상이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전력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과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

(15)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계획 등 마련 필요

-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본격 가동 시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0%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력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온실가스 직접·간접배출 감축계획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적절히 걸러지지 못함. 이와 같은 중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산단이 승인되고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응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16) 발전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석탄발전 축소·폐지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발전기 이용률은 2024년도 기준 모두 절반 이하로 가동되고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공기업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발전공기업들의 수익에만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이익을 제한하는 전력거래제도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와 관련하여 정규직 노동자 외 하청업체 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보장과 산업전환 대책 등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고용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

(17) 정의로운 전환 대상에 민간 발전소를 포함할 필요

- ▷ 2035 NDC 토론회에서 제시된 5~8% 목표를 고려할 때 발전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석탄발전소도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전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간 발전소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할 것

(18) 발전정비 산업 구조 재편 필요

- ▷ 발전정비 산업이 민간에게 개방되면서 정비 품질 저하, 사고 위험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회

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

(19) 전력직접구매제도 개선 필요

▷ 전력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원전부문】

(1)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정책의 엇박자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 문제

▷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황임에도 장관의 탈원전 성향과 원전 수출 및 정부조직 개편 방침이 대통령의 기조와 어긋나 정책 혼선과 국제 신뢰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 개편 방안을 재검토할 것

(2) 정부 에너지 정책의 불일치 문제

▷ 대통령은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원전보다 태양광, 풍력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장관의 기존 원전 필요성 발언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실제 에너지 정책 방향이 탈원전인지 원전 유지 방안인지 명확히 할 것

(3) 신규원전 도입 또는 연장 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고준위 방폐물 대책과 경제성 검증 없이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하

고, 신한울 3·4호기 재개, 대형 신규 원전 2기 추진 등 지난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무책임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전의 연장운전 또는 신규원전 건설 시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4) 원전-재생에너지 에너지 믹스 재정립 필요

-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모두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므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경우 원전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며, 에너지 믹스 개념을 세계적 흐름에 맞게 재검토할 것

(5) 공정한 여론조사 설계 필요

- ▷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중 ‘원자력발전소 거주지 수용성’ 조사는 일부 전제를 누락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여론조사 설계를 통해 신뢰받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

(6)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 필요

- ▷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2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 등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
-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되었던 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검토하거나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이 불명확하므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

(7) AI·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원전 활용 필요

- ▷ AI 및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도, 대규모·안정적 전력 공급 수단인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함께 원전을 포함한 기저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원전의 역할을 재생에너지와 병행하여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의한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전과 SMR을 포함한 전력 공급 구성을 마련하였으며, 대만·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이 기저전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AI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간 역할과 업무분장 구조 재점검 필요

- ▷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거나 재산권과 같은 정보들은 법적 책임과 통제권이 있는 본청 소속기관이 중심이 되고 산하기관은 조사·연구기능만 지원하는 구조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역할과 권한, 책임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리체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2) 유역환경청에서의 민관협의체 재추진 필요

- ▷ 공주 백제문화행사에서의 담수 문제와 같이 민관협의체 운영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역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유지할 필요

(3)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지침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규정 개정여부 확인 및 개정 필요

- ▷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취지와 다르게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계획을 보고할 것

(4) 노조법 시행 관련 철저한 대비 필요

- ▷ 에너지 공공기관은 노조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

(5) 멸종위기종 무허가 수입·반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없이 수입·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관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고 있으나(감사원 지적사항), 두 법은 각각 보호하려는 법익과 목적이 다르므로 세관의 처벌과 별개로 환경청도 관련 법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

(6)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 난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경상북도 안동시, 강원도 영월시에서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적정통보를 받고 사업을 실시 중이며, 경상남도 함안군에서는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 난립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마련 필요

- ▷ 원전 발생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및 포화율을 보면 예상 포화시점이 2030년이나 건식저장소를 건설하는 데는 5년~7년이 소요되므로, 원전에 사용 후 핵연료가 넘치기 전에 건식저장소가 완공되도록 노력할 것

(8)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 필요

- ▷ 에너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지양하고, 자산 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 등 수립된 자구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것

(9)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복지 제도 개선 필요

-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IT 취약계층이 신청 누락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자동 감면 시스템을 구축할 것

(10) 재해복구센터(DR) 실효성 제고 및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

- ▷ 화재 시 4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한 핫 사이트(Hot-site) 비율을 높이고, 시스템실과 배터리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

(1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필요

- ▷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순 교육을 넘어 지역 내 실제 대체 일자리 확보 및 유급 교육 훈련 지원 등 실질적인 전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12) SRF·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분야 그린워싱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필요

- ▷ SRF 및 바이오매스와 같이 폐기물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거나, 에너지 관련 제도 및 기관 명칭 등이 정책 실체를 왜곡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SRF·바이오매스 및 REC 제도와 에너지 산하기관 명칭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13)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성 확보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 ▷ 전기요금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규제 기구 설치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14) 에너지 산하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체계 강화 필요

- ▷ 기후부 에너지 부문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체 에너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비 집행 내역과 법률 소송 수행 현황 등을 포함한 공직기강 점검 및 감사계획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의 윤리기준과 감사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1)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직기강 문제

- ▷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민 조롱 현수막과 비리·산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청렴성, 안전의식 붕괴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와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2) 지역 주민 조롱 현수막 게시 등 공직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필요

- ▷ ‘무료 국수 조롱’ 등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시혜적 의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윤리 경영 대책을 수립할 것

(3) 언론 상대 무분별한 소송 자제 및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

- ▷ 공공기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입틀막’ 식 대응을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

(4)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 및 재정비 필요

- ▷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한국형 경수로(APR1400) 자료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원전기술 보안체계를 점검할 것

(5) 신한울 3·4호기 추진 점검 필요

- ▷ 신한울 3·4호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점검할 것

(6)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의 규정 준수 및 이행 촉구

- ▷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과정이 외부 요인이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규정과 절차,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지 선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 ▷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유치 의향조사 및 동향 파악 절차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므로 원전 부지 유치 공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7) 원전 출력 감발 증가 및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 필요

- ▷ 원전 출력 감발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 기후변화 등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8)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불평등 계약 논란 해소 및 수익성 검증 필요

- ▷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로열티 지불, 1개 발전소 당 1.1조 원 규모의 신용장 발행 등 사모펀드(브룩필드)의 수익만 보장하는 불평등 계약 요소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수출 수익성을 검증할 것

(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확보 필요

- ▷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포화 임박에 대비하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식 저장시설 확충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할 것

(10) 원전 출력 제어로 인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출력 제어 증가로 인해 펠렛-클래딩 인터랙션(Pellet-Cladding Interaction, PCI) 손실 등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수자원공사 ◀

(1) 초순수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 필요

- ▷ 수자원공사는 초순수 설계·시공·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과

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순수 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 자립을 지원해야 하며, 공업용수 분야에 한해 제도 개선 등 진입 장벽 완화에 적극 검토할 것

(2) 4대강 홍보관 정치적 활용 중단 및 운영 개선 필요

-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미화하는 전시 콘텐츠를 일괄 설치·철거한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홍보 활용 의혹을 키우는 만큼, 4대강 문화·홍보관을 국민 참여형 물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고, 콘텐츠 노후화 및 시설 미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

(3) 우크라 재건사업 MOU 추진 실효성 및 예산 낭비 전면 재검토 필요

- ▷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 MOU를 과도하게 체결하고, 다수의 해외출장에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정책 실효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므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것
- ▷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식 초청 없는 우크라이나 방문단의 전 일정을 포함해 항공·숙박·통역비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고, 전쟁 중임을 알면서도 줄속 추진한 용역의 계약금액과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로, 사업 추진 배경과 책임 소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것

(4)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지속 관리 필요

- ▷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검토하고 MOU 11건 및 MOA 1건을 체결하는 등 실질 성과를

도출한 점은 국가 경제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는 성과 관리를 실시할 것

- ▷ 기술력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할 것
- ▷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에서 2000억 손실이 발생하였고, 필리핀 사업에도 투자 중인데, 위험성이 더 높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것
- ▷ 수자원공사 사장은 과거에는 수자원공사가 일부 재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ODA이므로 재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폴란드 현지 기업 간담회에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통령실과의 사전 소통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원실로 보고할 것

(5) 민간기업인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

- ▷ 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MOU를 맺은 것을 민간기업인 삼부토건이 주가조작에 이용된 측면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

(6) 국가중요시설인 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와 보안체계 구축 및 확립 필요

- ▶ 댐은 중요한 국가중요시설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플랫폼에서의 댐 노출 등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보안체계를 확립하여 의원실로 보고할 것

(7)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의 상수도시설 개선 필요

- ▶ 강원도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의 상수도시설이 전국평균보다 낮으므로 광역상수도망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것

(8)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지방이전 검토 필요

- ▶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입지 관련, 용인의 전기 및 용수 공급 문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불균형 발전심화 문제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또는 장기계획으로 된 것들은 해당 자원이 풍부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9) 상수도 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침하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표한 지반 침하의 원인 1 순위가 하수도관 손상이고, 그 다음이 상수도관 손상임. 그 중 광역 상수도의 경우 수도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국가수도 기본계획 추진 시 관로 손상이 우려되는 노후관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관로 개선 사업을 집

중적으로 시행할 것

(10) 공사 입찰 관련 내부 심의위원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단지조성공사(1단계) 입찰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 내부 심의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외부 위원이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저수지 전도현상에 따른 수질 오염 예방 및 전수조사 실시

- ▷ 최근 대구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변색 사태의 원인이 운문댐의 저수지 전도현상(표층수와 심층수가 뒤섞이며 오염물질 부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운문댐뿐만 아니라 관리 중인 전국의 모든 댐에 대하여 유사한 전도현상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2)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 필요

- ▷ 2023년 1월 결정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사업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내부 전산망 및 통화기록 접근 거부 등으로 인해 2023년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사 측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비위 혐의자(8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있으며, 관련 직원들이 휴대전

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확인되므로, 입찰 비리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위한 위원회 의결할 것

▶ 한국환경공단 ◀

(1)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개선 필요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대규모 방치·고장·정보누락 사례가 적발된 문제가 있으므로, 공단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

(2) 안전관리 부실 책임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 전주 드론 시범사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을 추진하고 공단이 스스로 요청한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사업 추진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R&D 예산 편성 필요

- ▷ 굴뚝측정 장비를 드론으로 이동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도중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 안전 R&D 예산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 R&D 예산을 편성할 것

(4) 성능평가 불가 폐배터리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 ▷ 회수된 폐배터리의 절반 이상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평가 불가 폐배터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5)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및 EV이음 어플 등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개선 필요

-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내 충전기 정보 누락 및 낮은 가독성 문제와 EV이음 어플의 저조한 앱스토어 평점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편할 것

(6)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이행률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대안과 수질검사 홍보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대해 보고할 것

(7) 지하수 시설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 2025년 한국환경공단의 지하수 시설개선 목표는 1,257개소이나, 현재까지 515개소에서 실시되었고, 남은 3개월 동안에 약 700개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하수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EPR에 섬유폐기물 포함 필요

- ▷ 섬유폐기물은 해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포함되어있지 않아 기초 통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섬유폐기물이 EPR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 국립공원공단 ◀

(1) 퇴직연금제도의 전면적 도입 필요

- ▷ 국립공원공단의 퇴직급여 총당률이 39.8%이고, 운용 또한 일반직 및 특정직은 사내 적립을 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는 DB형으로 운용하는 등 이원화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전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전면적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휴양공원 제도의 도입과 청량산 도립공원 및 도산구곡에의 지정 필요

- ▷ 인문까지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감안한 휴양공원 제도는 충분히 도입할만 하고, 경북 북부 청량산 도립공원 및 도산구곡은 자연과 인문, 지리환경이 모두 수려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휴양공원으로의 지정을 고려할 것

(3) 국립공원내 안전사고 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과 사망사고가 빈번한 비법정 탐방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국립공원내 안전 및 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중 20명이 비법정 탐방로 추락사하였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유형들을 분석하여 데이터화 하고 특히 비법정 탐방로 등 사망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제출할 것

(4) 해안쓰레기 수거 인력과 예산·장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2024년 기준 해안쓰레기가 총 4,600톤 발생하였으나 이 중 2,100톤만 수거, 2,400톤은 방치되고 있음. 해안쓰레기 수거는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안쓰레기 수거 인력과 예산, 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 기상이변 시 고지대 대피소 직원의 근무제도 보완 필요

- ▷ 지난 7월 발생한 지리산 연하천대피소 직원 사망사고 관련하여, 기상이변 시 고지대 대피소 직원의 근무 중단이나 하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단속 근로자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근로시간 관리 개선안을 마련할 것

(6) 주왕산 국립공원 산불 피해 관련 신속한 복원 및 조림 사업 필요

- ▷ 2025년 3월 발생한 의성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왕산 국립공원의 3,260ha의 산림손실이 있었고, 너구마을과 내원마을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역 상가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립공원공단은 피해복구와 조림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

▶ 국립생태원 ◀

(1) 국립생태원 누수 반복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

- ▶ 국립생태원에서 지속적인 누수와 하자 보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 용역 중단시 회수비용이 환입비용 초과할 경우 절차 중단 필요

- ▶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참여 중 사망한 외부조사원의 조사수당 환입을 위하여 해당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3) 생태원 누수 관련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 생태원의 빗물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4) 국립생태원 연구직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

- ▶ 생태원장과 제자가 참여한 연구용역 과제가 필기시험 서술형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 등 제자의 채용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실 규명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5) 생태교란종인 배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 ▷ 생태교란종인 배스가 거의 모든 수계에 서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

(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

- ▷ 경기도 양평 강하면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자체는 대응하지 않고 있고, 문경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7개월 만에 자연생태등급 재평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현장에서는 사업 합법화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7) 동물원 허가제 전환에 따른 대규모 유기 사태 대비 및 생태계 보호 대책 수립 필요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야생동물 카페 등의 폐업과 그로 인한 보유 동물의 대규모 유기 사태가 우려되고, 유기된 외래 동물이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협의를 통해 폐업 시설의 동물 보호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국내 플랫폼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대형 포털·유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2)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및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 최근 5년간 수천 건의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가 적발되었으나,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연평균 4,000건이 넘는 점검 대상을 3명의 담당 직원이 전담하고 있어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며, 이에 따른 온라인 유통사와의 자율 모니터링 협약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친환경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환경표지 무단 사용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 최근 4년간 환경표지 무단 사용 적발 건수가 172% 급증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현행 처분이 대부분 시정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 수소염화불화탄소가 검출된 중국산 PF보드와 관련된 친환경
인증 문제 개선 필요**

- ▷ 중국산 PF보드 4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규제대상인 수소염화불화탄소가 검출되었고, 중국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므로,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제출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불법 수의계약인 그린에너지개발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감사
원 감사 의결필요**

- ▷ 불법 수의계약인 그린에너지개발과의 계약을 추가합의서를 통해 계약갱신 이행 청구 소송 판결의 최종확정일까지 연장한 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결이 필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사의 입장대로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2)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의 사명변경과 사업 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창출 필요**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에 따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공사명을 변경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며 이에 맞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 드림파크 CC내 캐디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 드림파크 CC내 캐디 근무자들의 휴식 공간에 쥐가 출몰하고, 냉방여건이 열악하며,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확인 후 의원실에 보고할 것

▶ 한국에너지공단 ◀

(1) 에너지바우처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미발급 비율이 높으므로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절차, 결제방식, 정보접근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 방식 개선 및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필요

- ▷ 발전 공기업의 REC 외부 구매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건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RPS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며, 부유식 해상풍력의 특성을 반영한 입찰 제도 및 국산 공급망 기여도 평가 기준을 재정비할 것

▶ 한국전력공사 ◀

(1)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 필요

- ▷ 대기업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은 피하면서 싼 전기를 골라 쓰는 ‘체리 피킹’ 방지를 위해 망 사용료를 현실화할 것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 필요

- ▷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인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할 것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

- ▷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산지소(地產地消)' 개념을 도입하여 전력 생산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

(4) 섬 지역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접고용 검토 필요

- ▷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섬 지역 발전 노동자 184명의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상고 남발 없이 직접고용 등 고용 안정을 추진할 것

(5) 한전 KDN 민영화(지분 매각) 계획의 전면 재검토 필요

- ▷ 전력 IT 및 보안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 기업인 한전 KDN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전력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큰바, 해당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

(6)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계획 대응전략 수립 필요

- ▷ 정부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계획이 한국전력공사의 운영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탄소배출권 대응전략을 철저히 수립할 것

(7)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대책 마련 필요

- ▷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한전MCS 검침 업무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 한전MCS 검침 업무 축소에 따른 유희인력 증가와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미사용 전력망에 대한 회수 및 재분배 등 해결대책 마련 필요

- ▷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후 미사용하는 전력망 용량에 대한 회수 및 재분배 등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0) 지반침하 사고 관련 해결방안 마련 필요

- ▷ 당진시 부곡공단에서 한국전력공사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1)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의 원활한 이행 필요

- ▷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장기 배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12) 적정 안전관리비용 지급 필요

-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것에 비해 안전관리비용은 기존대로 처리하도록 한 지시가 많은데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것

(13)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 준비 철저 필요

- ▷ 2026년 예정인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4)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및 제출 회피 정황에 대한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한국전력공사의 납품업체 대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보고된 문서를 비공식 문서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등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고,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므로, 경영진과 관계부서의 장이 해당 자료 미제출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 한국전력거래소 ◀

(1)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정보 공개 필요

- ▷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을 위해 전력 수요 전망에 사용된 데이터 모형, 모형의 설계 운영자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2) 재생에너지 실시간 시장 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준비 필요

- ▷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시장 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3) 전통적 발전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 필요

- ▷ 전력거래소 회원사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으므로 전통적 발전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4) 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 정산조정계수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간의 재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사의 경영 의욕을 꺾지 않도록 재검토하고, 민간 발

전사의 정산조정계수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전KPS ◀

(1) 불법적인 고용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발전사로부터 도급받은 정비 업무를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불법적인 고용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내부 인사 미진행 해소 필요

- ▷ 사장 인사 지연에 따른 내부 인사 미진행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한전MCS ◀

(1) 검침 업무 축소에 따른 일자리전환대책 마련 필요

- ▷ 검침 업무 축소에 따른 유희인력 증가와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전환대책을 마련할 것

▶ 발전 5개사 ◀

(1)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 확대 필요

- ▷ 발전 5개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5.6%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2)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공공성비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근속·무사고 근로자에 대해 숙련등급을 부여하고 계약시 가점을 제공하는 정비숙련인증제를 도입하며, 원청과 하청의 직무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

(3) 동반성장 협력대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동반성장 협력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ESS 화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ESS 설치 및 가동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ESS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제도 공사 직접 점검 대상 확대 필요

- ▷ 현행 규정상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1,000kW 미만만 공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 위험도가 높고 민간 관리가 어려운 1,000kW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사가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점검 이행률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 ▷ 모든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 민간 전기안전관리자가 연 1회 점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률은 20% 미만에 그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 관리자의 점검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 한국지역난방공사 ◀

(1) 대구 지역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 관련 매립가스(LFG) 사용 약속 이행 필요

- ▷ 대구 지역 설비 교체 사업 당시 지자체에 약속했던 매립가스(LFG) 우선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 지역 매립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우오수관 분류사업 가속화 필요

- ▷ 대구시의 우오수관 분류사업 추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비로 인한 오수 넘침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시가 협의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2)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지방청에서의 정확한 문제 지적과 중앙에의 보고 필요

- ▷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지방청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에 보고하여야 하고, 석포제련소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도 의원실에 보고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한강버스 사업의 환경영향 및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 검토 필요

- ▷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고, 사업 주체가 허가권까지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제도적 모순과 관리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므로,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환경영향 검토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 보 개방에 따라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 개선에 약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2)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비율 개선 필요

- ▶ 낙동강유역청은 타 유역청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 비율이 높고, 비공개 승인 검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3) 거짓으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재발 방지대책 필요

- ▶ 20년 낙동강유역청 소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거짓평가 의심이 있었고, 실제 약 5년 후 거짓 부실로 결정이 되었으나,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85건 중 84건이 착공을 완료하여 환경 파괴가 되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화학물질 시설 관리 체계를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 울산지역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사업장 수 대비 화학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석유화학 업계가 어려워 기업의 자율적 개

선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화학물질 시설 관리 체계를 연식 중심이 아닌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낙동강홍수통제소 ◀

(1) 물재해예방과 관련된 적극적 대비책 필요

- ▷ 모든 하천에 대한 홍수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와 유역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으므로, 물재해지원센터 등 기존에 있는 기능을 보강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해 예방과 관련된 적극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하수 기반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검토 필요

- ▷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 중인 미량오염물질에 마약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약 관련 전국 단위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하수 기반 불법 마약류 감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

(2) 가뭄 대응을 위한 빗물 활용 연구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필요

- ▷ 매년 20개 이상의 시·군이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하수 저류댐은 막대한 비용과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안이 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도 연구 예산을 활용하여 유역별 특성에 맞는 빗물 활용 시스템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화학물질안전원 ◀

(1)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관련 조례 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아 평가 결과 40%가 중점관리지역에서 D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1) 넥스트 팬데믹 준비 관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예산 등 지원 필요

- ▷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엠펙스) 등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검사에도 급급한 상황이므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예산, 조직 등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 2035 NDC 감축목표 재검토 필요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시한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IPCC 권고에 미달하고, 산업 부문 배출전망(BAU)을 과도하게 부풀려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축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산정 근거·부문별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 · 인사 · 재무 등 일반사항】

(1) 중대재해 수사조직의 주요 지청단위 확대 필요

- ▷ 중대재해 수사 관련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3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소까지 평균 1년 반이 소요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사건은 1322일 동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수사 조직과 역량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므로 현재 광역청에 있는 중대재해 수사조직을 주요 지청단위로 확대할 것

(2) 공무원 차별금지 및 처우 개선 필요

- ▷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없도록 할 것

(3) 근로감독 업무 기능 총괄 본부 조직 신설 검토 필요

- ▷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 업무 기능을 총괄하는 본부 조직 신설을 검토할 것

(4)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의 상고 취하 검토 필요

- ▷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국가가 이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였는데, 상고 취하를 검토할 것

(5) 고용노동부 산하 R&D 전담기관 설립방안 검토 필요

- ▷ 현장의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기술 개발, 산업별 맞춤형 보호장비 표준화 등 R&D 과제를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 기술·기준 및 인증을 통합 관리할 부처 내 R&D 전담기관 설립방안 및 산업안전 R&D 구축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6) 근로감독관 증원 예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업무 수행 기반 마련 필요

- ▷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

(7) 공공기관의 낮은 임금 수준 문제를 개선할 필요

- ▷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공공기관 인력 충원 필요

-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맞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9)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위법행위 감사 필요

- ▷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의 위법행위 관련, 부당 집행된 국고 예산을 환수하고, 징계 양형의 불균형과 행정 처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사를 실시할 것

(10) 고용정보원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 ▷ 고용정보원장 공모 과정에서 지원서 양식 임의 변경(연구·과제 수행 실적 허위 기재) 및 고용정책·노동시장 전문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추천 사유가 제출된 의혹 등이 제기된바, 고용노동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11) 지청 지휘체계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지청의 대응 지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서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대응 지연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지청 지휘체계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향후 조치 및 대응 지연 재발 방지 대

책을 마련할 것

(12)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통합적 노력 필요

- ▷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각 지방고용노동청마다 부정수급 적발 성과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각 지방청마다 통일적으로 부정수급 방지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증가율 등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등 차이가 나는바 구조 및 조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13) 노동위원회의 적정 조사관 인원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필요

- ▷ 노동위원회의 현재 사건 접수 건수 수준 및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 시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정 조사관 수 반영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

(1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들이 임원에 취임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할 것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보강 필요

- ▷ 최근 재심사청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인력 규모에 변화가 없어 운영규칙상 재심사 처리기간인 60일을 준수하는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바 인력 및 예산 증액을 검토할 것

(16) 중앙노동위원장의 무분별한 출장 및 강의료 수령과 관련한 특정 감사 필요

-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연간 수백 건이 넘는 출장을 실시하고 본인이 도입한 ADR관련 사업에서 직접 강의를 하여 연간 수백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점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것

(17) 한국폴리텍 업무수행 관련 감사 및 조사 필요

- ▷ 발전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 직속으로 두고, 이사장이 발전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추진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 캄보디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선제적으로 분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18)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필요

- ▷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지원단가가 일인당 2,400원으로 지원수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의 급식비 등 제반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19)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

- ▷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연가 사용률이 낮고, 질병 휴직률이 높으며 자발적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으로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노동정책 주관 부서로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

(20) 고용평등상담실 관련 예산 증액 노력 필요

- ▷ 전 정부에서 폐지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이 9개소분만 편성된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이 원상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할 것

【고용 부문】

(1) 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 필요

- ▷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수도권 편중, 온라인 과정의 자막 미지원 등

으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제한을 고려하여 제도개선할 것

(2) 내일배움카드의 교육과정의 최신화 필요

- ▷ 내일배움카드(KDC 훈련)의 전체 교육 77%가 정보 기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82%가 최소 20개월 이전에 제작된 과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최신 교육과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3) 국내 고용 생태계 회복 위한 고용 대책 수립 필요

- ▷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고용부분 전략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초노동질서가 갖춰진 청년·중장년층 고용 확대, 지역 고용 시장 활성화 등 국내 고용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수립할 것

(4) 고용허가제 쿼터와 발급실적간 차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 ▷ 2025년 고용허가제 쿼터와 실제 발급실적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상 현장 실태와 맞지 않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E-9 신청·발급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실시하고, 한국 문화·언어에 익숙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맞춤형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

(5)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반적인 정책 개선 필요

-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올리고, 보호일시해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불 청산전까지 체류가 보장되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관련 정책 전반을 개선할 것

(6) 지자체와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사항 협의 필요

- ▷ 지역과 관련된 외국인 노동정책에 있어 고용노동부·법무부·지자체의 협의에 기반한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자체에 외국인 노동정책과 관련된 쿼터·비자 등 체류자격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 이주노동자 인력이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바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8)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활성화 필요

- ▷ 커뮤니티 형성, 주말 상담 운영, 지원의 익명성 유지 등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은 민간에서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등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원한 사업을 재개하는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간 진행해 온 기초 연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10) 석탄발전산업종사자를 고려한 행정 필요

-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탄발전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석탄발전산업 종사자의 생활, 가정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논의시 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 현재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바, 수급자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 모성보호 정책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이전 등 실업급여제정 관련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전공 제한 철폐 필요

- ▷ 대학 전공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기에 설계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전면 재설계하고
학력·전공 중심에서 경력과 훈련,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한미투자협정으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

- ▷ 한미투자협정으로 미국에 대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바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
영향에 대해 점검할 것

(14)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직업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임대료, 이자,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업훈련기관이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폐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바 직업훈련비가 현실에 맞게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생의 자부담으로 인한 훈련 포기를
방지하는 등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고용보험 상실신고 허위 작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노동자들도 상실코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6) 해외 취업 사기성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 해외 고수익 미끼 구인광고로 인한 청년 납치·감금 등 중대한 피
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광고 모
니터링이 고용24 연계 광고에 한정되어 있고 고용주가 연계를 거

부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사전 필터링으로 차단된 광고에 대해서도 사후 시정·관리 여부가 불분명한바, 고용노동부는 고용 24 비연계 광고 및 사전 차단 광고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모니터링·시정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노동 부문】

(1) 노조 내부 정보 등의 대북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 ▷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노조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

(2) 개정 노조법에 대한 보완 입법 검토 필요

- ▷ 개정 노조법의 시행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하여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등 보완 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 노동시장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 ▷ 개정 노조법이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초기업 단위 교섭 확대·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의 부분도 우선하여 검토할 것

(4) 개정 노조법 제2·3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

- ▷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에 대비하여 사용자 범위, 교섭의 절차, 쟁의의 범위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노동위원회와 협조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작성할 것
- ▷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원청 경영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가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모의 원·하청 교섭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5)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적극적 중재 필요

-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구사대 폭력 사태 과정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한 정황이 의심되므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등 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할 것
- ▷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과거 노동행정개혁위의 직접고용 시정 권고 및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

(6)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 ▷ 한화오션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7)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대한 조치 필요

- ▷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전 정부 노동행정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전 정부에서 취약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주체로 접근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자·노동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고용노동부가 관여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는지 확인·조사하여 보고할 것
- ▷ 전 정부에서 화물연대에 공정위를 동원한 노동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ILO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였고 법원도 노동부의 행태가 틀렸다고 판단한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전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라는 노동 탄압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삭감된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복원하여 노동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것

(9)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침 재개정 필요

- ▷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건 강화로 체불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재개정할 것

(10)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의 신속 추진 필요

- ▷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과 감독을 확대하고, 강제수사와 엄중처벌이 사후적으로도 필요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양형위원회 협의 등을 실시할 것

(11) 임금체불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 노동관계법령으로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병, 신주 발행,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한 제재 방안과 장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기업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12) 수사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13) 한국전력 섬발전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조치 필요

- ▷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전력 섬발전 노동자의 불법 파견이 약 2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 개입하여 직접고용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및 조치하고 보고할 것

(14) MBC 특별근로감독 재조사 필요

- ▷ 고 오요안나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은 부실한 사실관계 조사 등 문제가 있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사에서 MBC를 제외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 해당 사안을 재조사할 것

(15) 안전한 일터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 ▷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랜드 기간제 직원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건이 지방관서에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고, 업무보고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한 일터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것

(16) 고 김충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

- ▷ 태안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노조 비가입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7) 퇴직연금 기금화 등에 대한 실효적 제도 설계 필요

- ▷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독립적·전문적인 기관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
-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대가 다수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 단체 설립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제의 형성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8)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적극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사업주 과소 불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강제정산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운용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예산 지원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19)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필요

- ▷ 주 4.5일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동계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
-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주 4.5일제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4.5일제의 논의시 소상공인 관련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논의를 실시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20)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균형잡힌 추진 필요

-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인력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

(21)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노력 필요

-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업과의 상생,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할 것

(22)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재구조화 필요

- ▷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예방적 관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방지도 등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교육, 채용, 재교육 등 전면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

(23)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필요

-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량이 임용포기자·퇴직자 발생 등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독 업무의 질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더불어 근로감독의 체계적·효율적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것

- ▷ 8급·9급 근로감독관의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까지 근로감독관을 6·7급으로 1300명 증원한다는 계획만 있어, 이들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과 처우 개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 낮은 처우, 불투명한 승진 구조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근로감독관 직무 교육 개선, 경력 활용 등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신설된 경찰청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등과 연계한 협업 구조 마련 등 효과적인 근로감독 방안을 검토할 것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의 미처리 비율이 24년도에는 78.2%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2028년도까지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인바, 근로감독에는 수사역량이 전제되어야 하고 인력확충보다 양질의 감독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은 수사 관련 통계 시스템을 보완할 것

(24)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

- ▷ 근로감독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근로감독관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25) 효율적 근로감독 방안 모색 및 불시 감독 비율 제고 필요

- ▷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로감독 물량을 대폭 늘리되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ILO의 원칙인 불시 감독 비율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늘려갈 것

(26)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 재검토 필요

- ▷ 근로감독관 연차별 증원 계획의 산출 근거를 재검토하고,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국가직 9급 공무원 97명이 임용을 포기한 상황에서 증원 계획의 현실성 및 근로감독관 관련 예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27)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적정성 제고 필요

- ▷ 일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 취하를 종용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8) 임금구분지급제 시스템 구축 필요

- ▷ 임금체불의 70% 이상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임금구분지급제 등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민간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29)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장려금 등 재구조화 필요

- ▷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내국인 노동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 전면적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

(30)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인 사람들만 공식 통계로 집계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계에 대한 총괄 파악 및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

(31)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후속조치 필요

- ▷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봐주기식 수사 의혹,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의혹 등에 대하여 억울한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

(32) 공정한 감독을 통한 쿠팡 노동환경 개선 필요

- ▷ 쿠팡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개인 친분, 노동현장의 감독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쿠팡으로의 이직, 서울 강남지청 감독관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쿠팡과의 정경유착이 의심

되는 문제가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인 자구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한 감독을 통해 구광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

(33)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수립 필요

-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노동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34) 물가상승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 ▷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2~3%인 상황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 등 생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35) 월 자율근무제 시범 도입 검토 필요

- ▷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만들고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자율근무제의 시범적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36) 임금체불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책임지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필요

- ▷ 임금체불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책임지는 방식의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

(37)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재고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 ▷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재고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양국 NCP(OECD 국내연락사무소) 간 협력 및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협력체계 활성화 필요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과 관련된 지자체의 책무 역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39) 이랜드리테일 특별감독 필요

- ▷ 이랜드리테일이 일부 직원들을 링크애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바 이는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

(40) KAI 임직원에게 대한 불이익조치 해결 위한 노력 필요

- ▷ KAI에 대한 정부의 사업 중단 및 임직원 해임, 임직원에게 대한 부당징계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등 불이익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41) 국선노무사 수당 지급 지연 문제 해소 필요

- ▷ 각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국선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정 예산 확보 방안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42)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필요

- ▷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의 44%가 시정조치 등 행정종결, 45.2%가 불기소 의견 송치되어 단 10%만이 기소 의견 송치되고, 송치 사건 중 기소율도 기소의견 송치 비율보다도 낮은 14.3%이며, 법원에서의 선고형도 56.1%가 벌금으로 실행 선고 비율이 매우 낮음.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부당노동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법 준수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을 마련할 것

(43) 지청별 부실조사 건 확인 및 시정조치 필요

- ▷ 필립모리스, 한국니토오토키칼 등 사안에 대하여 부실조사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부실조사 건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한 후 보고할 것

(44)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안 보고 및 수사 의뢰 검토 필요

- ▷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안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대유위니아가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파산

했다는 등 임금채무 회피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으로 사기죄, 상습임금체불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

- ▷ 고용노동부는 대유위니아의 임금채무 회피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황이 드러나면 타 부처와 함께 노력하여 수사 및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에 관련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소·고발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45) 법인 제도 및 파산 제도를 임금체불 변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조사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 대규모 임금체불 이후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제도 및 파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악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법원, 국세청과의 정보 실시간 공유, 직권조사, 합동근로감독, 과점주주에게 변제금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개정법 소급적용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계획과 대책을 보고할 것

(46)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필요

- ▷ 다른 계열사 지분 보유량을 늘리는 등 경제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임금체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금액 이상 임금체불한 회사의 합병, 신주 발행,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와의 협의 등 노력할 것

(47) 외국인 노동자 대상 중간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실태조사 필요

- ▷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을 브로커가 중간착취한 사안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수취한 임금을 원칙대로 사용자인 농민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농민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보장하지도 못하는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선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중간착취 실태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며,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브로커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48) 이행강제금 강제력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울산 자일대우버스 169억 원 등 총 391억원에 달하는바 이행강제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행강제금 강제 방안을 검토하고, 자일대우버스 사업장과 같은 노동조합 혐오성 위장폐업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49) 고소·고발 사건 시정지시 관련 지침 개정 필요

- ▷ 고용노동부 지침상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의 처분 이후 시정지시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즉시 시정지시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

(50)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매뉴얼 개정 필요

- ▷ 형사소송법과 법무부령 수사준칙에 따르면 파견법 등은 필요적 수사지휘, 입견지휘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소 분리가 2026년 예정되어 있는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수사 매뉴얼을 개정할 것

(51)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필요

- ▷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적 권한의 불충분한 행사로 인해 불법이 반복되는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 권한을 활용할 것

(5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신중한 검토 필요

- ▷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막중한바 이를 고려하여 제도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것

(53)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대책 수립 필요

- ▷ 아리셀 참사 이후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파견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

(54) 임금체불액 산정시 지연이자 포함 필요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등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체불액을 산정하는데 반해 일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은바 통일성

있게 자연이자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55)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검토 필요

-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축소로는 한계가 있는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인 사용자가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

(56)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 지방세연구원 소속 20대 청년이 가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하면서 경제적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

(57) 지역방송사 특별근로감독 적극 검토 필요

- ▷ KBS 지역방송총국 등 지역방송사에서 프리랜서 부당해고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바 중앙방송사 기획감독뿐 아니라 KBS 청주방송총국을 포함한 지역방송사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것

(58)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정립 필요

- ▷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고용노동청 지청마다, 근로감독관마다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판단 기준을 정립할 것

(59) 한국공항공사 인건비 낙찰률 문제 지도 감독 필요

- ▷ 한국공항공사의 인건비 낙찰률 제도로 인하여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평가 권한을 이용하여 지도 감독할 것

(60) 노동자 전자감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노동자 전자감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감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61)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로감독 필요

- ▷ 쪼개기 계약, CCTV 감시와 시말서 작성, 비밀유지서약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계열 업체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기획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6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처리 필요

- ▷ 쿠광의 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이 전국 여러 지청에서 신고된 퇴직금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들에 대해 일관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63)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필요

- ▷ 관리자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요하고 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관리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까지 실제로 대납해주는 등 이마트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64)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

- ▷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 규제로 인하여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의 재직자 상당수가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에 유연적인 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65) 특별연장근로 제도 운영의 엄격한 관리 필요

- ▷ 정부가 상시인력 부족, 납기 대응, 생산 일정 등 예측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업무량 폭증이라는 예외사유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를 제도적으로 허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과 건강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66) 노동교육 확대 필요

- ▷ 노동교육이 단발성 교육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최소한의 노동법 등 기본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 및 비임금 노동자,

이주 노동자, 사업주까지 생애 전 주기 노동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67) 요양보호사 자체대근비 관행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서울시 산하 병원 호스피스 병동 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위탁 업체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차 사용 시 자체대근비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는 사실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것

(68) 이석관리제 개선 필요

- ▷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15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직업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69) 야간노동 규제방안 마련 필요

- ▷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지속적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또는 최장 노동시간,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 등 야간노동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70) 대지급금 변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필요

- ▷ 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변제하는 사업주에게는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변제가 기업의 회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 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 에서 부적절한 인사평가, 조합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함께 직원들 다수를 양자로 입양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72)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바 공공부문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간 비례 수당 지급 등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73) 노동위원회 조사관 경력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 부여 검토 필요

- ▷ 과거처럼 노동위원회 조사관 경력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공인노무사 시험의 여러 과목을 면제하는 등 제도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산업안전보건 부문】

(1) 치명적 부상에 대한 별도 집계 및 데이터 축적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치명적 부상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치명적 부상을 별도로 집계하고 데이터로 축적할 것

(2) 산업재해에 대한 종합감독체계 마련 필요

- ▷ 산업재해는 단일한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 또는 근로기준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종합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3) 위험도에 따른 구분 감독 체제 마련 필요

- ▷ 중대재해 발생 증감률, 조치 이행률 등을 고려해서 고위험 사업장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저위험 사업장은 자율점검을 강화하되 무작위로 점검하는 전면적 위험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구분 감독 체제 마련을 검토할 것(

(4) AI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

-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자기규율형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AI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 2025년 기준 산업단지의 95%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증원예정인 지자체 감독관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집중관리할 것

(6) 소규모 현장 인근 지자체·경찰청 운영 CCTV 등 활용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필요

- ▷ 건설 현장 안전 관련 소규모 현장에서는 CCTV 등 스마트 장비들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설비가 갖춰지기 전까지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소규모 현장 인근 지자체나 경찰청이 운영하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상황에 대비할 것

(7) 근로자 안전조치 준수 인식 제고 및 의무 부과 등 방안 모색 필요

-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기업 처벌 위주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처벌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조치 준수 인식 제고 및 의무 부과 등 방안을 모색할 것

(8) 작업중지권 행사 관련 용어의 명확성 제고 필요

-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작업중지권 요건과 관련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나,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므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

(9) 작업중지권 제도 개선 필요

- ▷ 대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된 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산재발생의 격차가 발생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중지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0)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가 기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평가를 실시한 이후 노동안전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진단을 실시할 것
- ▷ 노동안전과 산업재해 부분에서 예방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무 주체, 사업주, 도급인 등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보완할 것
-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후관리 관련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점검·감독 후에 개선 확인 등 피드백을 통한 사고 재발 방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유가족 및 산재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사항이 부재하므로 유가족 보상금 인상 등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산재 예방 분야의 사업의 현황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

(11)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 수립 필요

- ▷ 산재병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할 것

(12)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 고용노동부는 쿠광을 포함한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 ▷ SPC와 같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13) SPC의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고용노동부는 SPC의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대통령 현장 방문 이후에도 SPC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 SPC에서 최근 3년간 반복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이 비상 정지장치 부재·미작동 및 자율안전확인제도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의 사각지대에 기인하는바 SPC 사고가 났던 현장의 기계들, 같은 모델의 기계들의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14)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종합적 근로감독체계 마련 필요

- ▷ SPC 사망사고는 시설결함과 노동조건의 문제가 결합되어 일어났고, 장시간 노동, 심혈관계질환 등은 대부분 근로기준 위반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기준 위반이 산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나 산업안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주로 감독을 하여 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 제도상의 미비가 있으므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근로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15) 끼임 관련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복 재질 개선 및 AI활용 필요

- ▷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들에는 끼임 발생시 힘을 주면 찢어지는 재질의 작업복으로 개선하는 방안, 야간 시간의 안전관리 공백에 AI를 활용하는 방안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

(16) 공공부문 산재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 공공부문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민간과 동일한 기준에서 유감 표명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할 것
- ▷ 코레일 사고 이후 공공 분야 산재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과 동일한 잣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산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보고할 것

(17) 산재 과징금의 산재 예방 투자 환류 필요

-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 과징금을 산재 예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8) 산재 과징금의 적정 수준 검토 필요

- ▷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규모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계획에 따른 과징금의 추정 규모 등의 추계하고 예측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
- ▷ 과징금의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30억, 영업이익 5%로 설계된 과징금은 건설업계의 평균 이익률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 안내·지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19) 잘못된 산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 ▷ 지난 정부 감사를 통해 산재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된바, 부정수급자로 공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노무법인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0) 안전규제 강화 보완책 마련 필요

- ▷ 안전규제 강화가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및 지연, 일감 축소 등으로

건설현장의 고용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산재 예방과 일자리 안정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안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것

(21)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필요

- ▷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실 산업안전 관리 관련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과 노동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특사경 파견 등 노동안전과 관련된 지도감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 ▷ 산재 예방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릴 것

(23) 산재기금 지출예산 중 예방 관련 법정비율 상향 필요

- ▷ 현행법상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재 예방에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문은 2010년도 법 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기금지출예산 중 예방 관련 법정비율 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

(24) 근로감독관의 산재 예방 관점에서의 운용 필요

- ▷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을 산재 예방 관점에서 운용하는 등 산재 예방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보고할 것

(25) 산재 재판 승소율 지역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 필요

- ▷ 산재 재판 승소율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산재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도입을 검토할 것

(26)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권에 대한 데이터나 지침 등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 잘 자리잡은 회사일수록 산재 예방에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권의 표준을 정하고 건설 현장의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27) 산재 다발 업종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필요

- ▷ 작업중지권은 관련 안전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효과가 있음에도 건설업, 조선업 등 산재 다발 업종에 대한 별도 법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므로 산재 다발 업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실습 훈련 방식으로 교육 방법을 바꾸고 교육 인프라 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산재 다발 업종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8) 재해정보 공개 등 산재알림시스템 구축 필요

- ▷ 산재 예방의 핵심 장치 중 하나는 재해정보 공개이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고용노동부는 상고를 하지 않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형 확정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기본정보는 공표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기업 공표제도를 개선하며,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재해조사의견서·재해조사보고서를 전부 공개하고, 사고와 무관하게 충실한 내용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산재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것

(29) 백화점·면세점 폭탄 테러 위협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

- ▷ 백화점·면세점 폭탄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지도조치가 없고, 백화점·면세점 관련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이 그간 없었음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백화점·면세점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제 안전교육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0)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도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산재보험법 관련, 2023년부터 최근까지 신고건수 10건, 인정건수 5건으로 그 수치가 저조하므로 원인을 추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31) 위험성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중처법 확정판결 22건 중 위험성평가 조항 위반이 86%에 달하는

데, 판결문 분석 결과 신기술·신공정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화된 제도, 노동자 참여 대상·절차의 불명확함 등의 이유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 업종별 평가 모델 최신화, 신공정, 신기술 반영, 근로자, 노동자 참여 절차의 구체화, 개선 이행 추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32) 사업주 처벌 수준의 법정형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한 편이므로 법정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

(33)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시 제재 등 제도개선 필요

- ▷ 최근 인천공항 상가시설 중 SPC 계열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 인프라에서 중대재해 처벌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국가 인프라 계약·입점 등에 있어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시 법적 제재 등 범부처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4)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필요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5) 동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설립 적극적 검토 필요

- ▷ 산재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한 공공 추모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의 설치 필요성이 있고, 부울경의 경우 공원묘지 800기 조성이 필요한바 동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6)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 ▷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보상 지급 기능이 확실하다는 점이 있으나, 사보험에서처럼 기업의 위험 극복 노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능이 약한 측면이 있는바, 산재보험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경우 산재보험료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37) 쿠팡 청문회 논의사항 이행점검 필요

- ▷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2025년 1월 청문회에서 약속하였던 노동환경·안전개선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것
- ▷ 쿠팡 CLS가 청문회에서 분류작업 개선 등을 약속하였으나 과로사 지속 발생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각고의 조치를 취할 것

(38) 장해급여 등 신청의 단순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정수수료 제도 등 도입 검토 필요

- ▷ 장해급여 등 급여 신청의 단순 대행 업무로서 노무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법정수수료를 설정하거나 과다수수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39)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감독 필요

- ▷ 무안공항 참사에서 기장, 부기장 등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위법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것

(40) 중대재해 수사 지연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수사 기간 평균 376일, 기소까지 소요기간 평균 1.5년으로 중대재해 수사가 지연되는바, 장기 사건 대응팀 구성, 집중 처리 기간 시행, 수사 처리기간 인사평가 반영, 부당지연에 대한 감사,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형사법 교육 및 노동부 자체 역량 강화 등 수사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

(4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 형평성 여부 등 검토 필요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약 4년이 되어 법 적용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중대재해 사고 시 입건 및 처벌 등이 형평성 있게 작동하는지와 공정한 집행 여부를 검토할 것

(42) 경주 노동자 질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한 경주 노동자 질식사고는 안전보건조치, 교육 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였던 사고로 보이는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43) 재해 발생 시 처리매뉴얼 등 시스템 개선 필요

- ▷ 고위험 화학물질 사업장인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설비마다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이로 인하여 사고에 즉각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황산사고 은폐 논란까지 발생하였는바, 재해 발생 시 처리매뉴얼 정비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44) 심야 배송 중단 요구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심야 배송 중단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선택권과 이미 형성된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등 간의 거래 생태계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

(45) 위험의 외주화 방지 필요

- ▷ 위탁집배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쿠광이나 실질적인 택배회사와 같은 원청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고,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하청의 재해 발생 건수가 원청에 최대 10배까지 높게 나오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불법 파견 고용구조 해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46)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정책 강화 필요

- ▷ 전체 중대재해의 10.7%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

부문 산업안전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거 정부에서 분기별로 시행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사고 사망 명단 공표제를 재추진하고, 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의 산재 예방 부분을 교부세와 연동시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를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할 것

(47) 보건진단 명령의 실효성 확보와 산재조사표 제도 개선 필요

- ▷ 보건진단 명령 위반에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낮고, 산재조사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48) 니토옵티칼에 대한 산재 역학조사 필요

- ▷ 암 진단을 받은 니토옵티칼 전·현직 근로자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안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니토옵티칼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

(49) 산업안전 혁신 지원법 제정과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 설립 필요

- ▷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의 국산화, 표준화 인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여 산업안전의 표준 인증 및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전담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으로 R&D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50) 산재 보상금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 산재 보상금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근로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위한 근간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 보상금 액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임. 적정 산재 보상금에 대한 조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는 등 산재보상 제도를 개선할 것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업체 평가 개선 필요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허위 컨설팅이나 업체 평가 등급 허위 공시 등의 문제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52)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 특별진료가 가능한 특진기관 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것

(53)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재보험 감면 기준 확대 등 필요

- ▷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재보험료 20% 감면 제도의 대상 업종 확대 및 산재보험료 할인 비율 상향 또는 할증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54) 건설공사 등의 안전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 인상이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발주자 책임 강화와 계상 의무 주체 확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 시 엄격한 제재 조치 등 종합 대책을 세울 것

(55) 중대재해 발생 기업 병합조사 필요

- ▷ 단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문화 미정착 등이 그 원인으로, 이를 별도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56) 안전 디자인 개선 필요

- ▷ 확산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제고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안전 디자인을 고안할 것

(57)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원인조사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58)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필요

- ▷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비공개 관행에 최근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최근 니토옵티칼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와 같이 실제 환경부가 공시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안전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59)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시정 필요

- ▷ 공휴일 운동장 개방 요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거절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시행할 것

(60) 방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지침 강화와 개선 필요

- ▷ 방위산업체 SNT모티브 공장 내 총기실험실에서 총기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례를 볼 때 방산업체는 군 관련 규정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에 맞춘 별도의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감독체계가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이는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지침 강화와 개선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

(61) 퀵서비스배달업 재해방지대책 마련 필요

- ▷ 시간제한 미션이 유발하는 과다경쟁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아짐에도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 시간 제한을 금지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안전가이드라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함.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간제한 미션 등의 배달 중계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며 지침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1) 해외 취업 사기 관련 제도개선 필요

- ▷ 해외 취업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구인·구직 광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대형 구직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며,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 포털 구인광고 등을 점검할 것
- ▷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취업 사기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 취업 알선 관리·검증을 위하여 취업 정보의 실시간 추적·감시·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2)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 출신학교 서열을 매기는 등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관련 채용비리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된 사안과 관련하여 채용절차법 개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3) 불공정 채용 근절 필요

- ▷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공정 채용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바, 노동조합원 자녀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

(4) 심우정 전 검찰총장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비리 관련 후속조치 필요

-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국립외교원 채용 비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은 있으나 외교법 위반 여부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면접 시 인사운영팀 미참여 등 매뉴얼 미준수, 내부 결재 문서 미비 등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채용절차법의 법적인계를 보완하며, 문제시 채용 특혜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

(5) 정년연장 정책 관련 제도개선 방향 모색 필요

- ▷ 양극화된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청년 선호형 일자리인 세대상생형 등으로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차별화된 정년연장 대처방안을 검토할 것
- ▷ 정년연장 정책으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임금체계 조정까지 감안한 정년연장 정책을 마련할 것

(6)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제도 확보 필요

- ▷ 정년연장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 등 소수로 한정되어 중장년 고용 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검토보고서 등을 볼 때 정년연장보다도 중장년 고용 지원이 시급한바,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확보할 것

(7)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청년일자rido약장려금 도입 등 검토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대책은 쉬었음 청년을 장기 미취업 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등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청년일자rido약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8) 유산·사산 여성의 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도 제고 위한 노력 필요

- ▷ 유산·사산한 여성의 유산·사산휴가 활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산 또는 사산시 유산·사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정책 홍보 등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9) 워라벨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 사업 개선 및 사업 확대 필요

- ▷ 워라벨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사업의 취지 등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워라벨 행복산단 모델 사업과 같은 사업을 많은 산단에 실시할 것

(10) 청년일자리 내역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청년일자리와 청년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을 고려하여 관련 내역사업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훈련에 참여하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12) 중증 장애인 지원강화 필요

- ▷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40만원 정도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13)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복원 필요

-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 및 업무환경 개선 노력 필요

- ▷ 노동 분쟁의 최근 증가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휴직률이 11.9%일 정도로 조사관들의 노동 실태가 열악한바 조사관 증원과 활동비 수당 인상 등 조사관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노동 분쟁 증가에 따른 조사관 증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증액,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신청사건 통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검토하고 추가 소요 예산과 인력 증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제신청제도 신설 검토 필요

-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시스템 하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극소수만이 진정 건에 대하여 법 위반 판단을 받는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괴롭힘 판단, 가해 행위자 징계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것

(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지급 지연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국선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정 예산 확보 방안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증액 필요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이고, 회의 참석비에서 교통비를 제하면 더욱 적은 금액인바 수당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5) K-ADR 스쿨 강의로 기준, 강사 위촉기준, 성과평가 점검 및 개선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 현직 위원장이 K-ADR 스쿨 강의로 1,378만원을 수령하는 등 ADR 사업의 발주 과정, 위탁 절차 및 강사 위촉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DR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검증하여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을 개선할 것

(6)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감독 강화 필요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심판 판정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잘못 발송하였던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 지표에 조정 노력 점수가 추가됨에 따라 이미 노사자율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까지 조사관이 사후조정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사안 등이 있었는데,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할 것

(7) 긴급이행명령 제도 활성화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주무기관임에도 긴급이행명령 신청 실적이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AI 도입 필요

- ▷ 노동위원회 조사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초적인 조사, 법률 검토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상 격상 및 독립성 강화 노력 필요

- ▷ 폭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단위 결정 등 중앙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큼에도 그에 걸맞은 위상과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고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조직 체계와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 외국인 노동자 권리침해 사건 통계 관리 필요

- ▷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권리침해 사건 통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외국인 표시란을 추가하고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 신청 건수나 유형을 종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통계를 관리하고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포함시킬 것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접근성 제고 필요

-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법 관련 설명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 안내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불편과 직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것

(12)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 ▷ ADR을 강조하면서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직권조사는 평가지표상 배점이 삭감되었는데 노동부 감사 결과 ADR 솔루션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ADR에 치중하기보다 직권조사 기능, 심판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위원회 내 노동자판단위원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분쟁조정 기능,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능 등 향후 강화가 요구되는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주력할 것

(13)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조체계 구축 필요

- ▷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에 대비하여 사용자 범위, 교섭의 절차, 쟁의의 범위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작성할 것

(14) KBS 부당해고 관련 엄중 조치 필요

- ▷ KBS 청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음에도 KBS는 복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하도록 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독립적인 심의기관 마련 검토 필요

-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노사 의견 대립시 실질적인 결정권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1) 재심사 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

- ▷ 최근 재심사청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인력 규모에 변화가 없어 운영규칙상 재심사 처리기간인 60일을 준수하는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재심사 회의 한 건당 시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세종시에서만 구술심리가 진행되어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시

행하고 분원 설치 및 영상진술 제도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

(2) 산업재해 재심 승인율 개선 필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 승인율이 2020년 9.29%에서 2025년 8월 5.42%로 현저히 낮아졌고 불복소송에서의 승인율 20.9%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아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심 승인율을 높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심사위원회 인원구성 변경도 검토할 것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1) 공익위원 및 근로자위원 비율 변경 검토 필요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이 60%를 차지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절한지, 근로자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원저글로벌 단체협약 위반 사안 재검토 및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원저글로벌 희망퇴직 특별위로금 지급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는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나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및 원저글로벌 중전의 관행에 따르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임. 이 사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원저글로벌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할 것

(2) 필립모리스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적극적 행정 이행 방안 및 공직기강 확립 조치 필요

- ▷ 필립모리스 진정 4건 중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수사가 미진하였고, 온열질환 산업재해 고발 사안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하였으며, 의원실 자료 요구 이후 필립모리스를 대리하는 로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과 소통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는바, 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확립 조치를 마련할 것

(3) 콜센터 교육생 처우 근로감독 검토 필요

- ▷ 콜센터 아웃소싱 용역 업체들에서 교육생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진정이 접수되었으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검토할 것

(4) 한국공항공사 쟁의행위 적극 대응 필요

- ▷ 한국공항공사 인건비 낙찰률 제도와 관련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대응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한국니트옵티칼 산업재해 및 고용 문제 조사 및 보고 필요

- ▷ 한국니트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조혈기계암이 추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 은폐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조사하고, 해외 소재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배원 한국니트옵티칼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와 백혈병 산재 발생 대응 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촉구하여 조사내용 및 자료, 한국니트옵티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 ▷ 한국니트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암 발생이 빈발하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을 중간 착취하는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

- ▷ 2025년 7월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도합 약 1.8억원 임금채불 집단 진정을 제기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수사중으로, 대규모 중간착취 문제로 보임. 진정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구군 계절노동자를 전수조사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

(3) 신화다이나믹스 불법파견 및 노사대립 문제 대응 필요

- ▷ 신화다이나믹스에서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보이고 노사대립 상황도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적극 대응할 것

(4)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과로사 관련 재해사망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 동두천시에서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환경미화원이 과로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정확한 재해사망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5) 채권문제로 인한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

- ▷ 원청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인 한덕엔지니어링의 가압류 문제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원청이 기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할 지청인 안양지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6)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 근로 환경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가 근무하는 T1 수하물터미널은 4층 구조로 된 수하물 처리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가 없고, 근로자들이 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생명

과 안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대응이 지연되었는바 폭력 사태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 지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한화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 적극적 수사 필요

- ▷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노조 선거 개입뿐 아니라 과거 2015년 삼성테크윈 인수 당시 금속노조 탈퇴 종용, 삼성탈레스 근로자위원회 특혜를 종합하여 보면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닌 한화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관할지청 뿐 아니라 부산청 등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

(3) 삼성SDI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동자측 의견 청취 필요

- ▷ 삼성SDI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근로감독이 있었으나 노동자측 면담 없이 근로감독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근로감독 시 노동자측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최저임금 위반 합동조사 및 계도 필요

- ▷ 대구가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전국 1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바 최저임금 위반 합동조사와 계도를 실시할 것

(2)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 부당노동행위 수사 신속 처리 및 산업안전 관련 사고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 사업장에서 교섭 불참, 노동조합 활동시간 부여 거부, 직장폐쇄 등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는바 고소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고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한국전력 불법파견 사건 신속 처리 필요

- ▷ 한국전력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2020년 시작되어 1심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노동청에서 불법파견범죄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고, 2024년 근로자들이 불법파견범죄를 진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입건되지 않았으며 시정지시, 특별근로감독 등도 없었는바, 한전KPS 사안과

같이 근로감독, 입건, 수사전환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할 것

(2)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엄단 필요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수차례 지도행위와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노동행위 4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바 노사 자율 교섭 중시 입장을 버리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

(3) 군산농협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감독 필요

- ▷ 군산농협에서 임금체불, 성과급 및 학자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노동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바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감독을 검토할 것

(4) 제주 노인생활지원사 전자감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재조사 필요

- ▷ 제주시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어플 위치추적을 이용한 전자감시에서 위치추적 오차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용자 면담, 경위서 작성이 강요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으나, 조사 결과 정당한 복무관리로 판단하고 행정종결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현대제철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재수사 철저 필요

- ▶ 2021년부터 시작된 현대제철 교섭 거부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음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방치하고 불기소처분하였음. 계속 진행 중인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재고소하였는바 다시 입건하고 철저하게 재수사하며,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2)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 처리와 직접고용 필요

- ▶ 현대제철 사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2018년 근로감독청원이 있었음에도 시정지시가 2021년, 기소가 2024년에야 되었으며, 민사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을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2016년 시작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아 6차에 걸쳐 2,000명 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불법파견범죄의 피해자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

(3) KBS 부당해고 관련 엄중 조치 필요

- ▶ KBS 청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음에도 KBS는 복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감독 등 강하게 조치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산재 장해급여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 치료 병원 폐업 · 의사 이직 등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업무지침상 가능한 대체 서류 인정이 되지 않고 공단병원 이용에 대한 안내도 미흡해 산재 노동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장해진단서 외 인정 서류 명확화, 공단병원 안내 의무화, 공단병원 발급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것

(2) 퇴직급여 충당금 미적립 문제 개선 필요

- ▷ 공단의 퇴직금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 부문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퇴직금 미적립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퇴직금 적립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운용체계 개선 필요

- ▷ 근로복지공단이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단기간에 1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 ·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비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담부서 신설, 운용 전문인력 확충, 예산 지원 확대 등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금 운영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확충할 것

(4)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 직업복귀 지원체계 개선 필요

- ▷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의 장기 요양과 낮은 직업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직장적응훈련 등 지원체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바, 요양 이후까지 연계되는 심리치료·직업복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근로복지공단 운영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필요

-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법과 제도적 운영 틀이 미흡한바, 산재병원의 재활·특화 기능 강화와 지역 공공성 제고를 포함하여 공단 운영체계 전반을 시대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선진화할 것

(6) 산재보험 부정수급 점검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 필요

- ▷ 전 정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한 과도한 조사로 산재 노동자 관련 정책 전반에 위축 효과가 발생한바,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감소·소송 증가 등 부작용과 후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업무상 재해·질병 판정을 정상화하고 과거 법원 판례와 규정에 따른 판단을 강화하는 등 재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7)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필요

- ▷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인력 충원이 결정된

만큼 연도별 단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보고할 것

(8) 산재 판정 및 소송 관련 업무 관행 개선 필요

- ▷ 산재 소송에서 패소율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 중심 판단 관행을 개선하고, 판례·법리에 따른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을 정착시키는 한편, 기계적 상고를 배제하는 명확한 상고 방침을 마련할 것
- ▷ 산재 소송 패소율 증가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 보수적·의학적 관점에 기인하는바, 향후 산재 판정 시 법적·규범적 관점과 국정 과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재 판단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

(9)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필요

- ▷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0) 산재 특별진찰 효율화 노력 필요

-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데이터가 충분한 질병의 경우 특별진찰 없이 자체 처리하고, 필요 시 외부 인증병원을 확대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

(11) 울산 산재병원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

- ▷ 울산 산재병원이 지역 최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2)공단 직원 안전 확보 및 민원 대응 강화 필요

- ▷ 민원인의 폭력·위협 상황에 대응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시설 방호원 배치, 민원 응대 공간 분리, 보호장비 보급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

(13) 산재병원 의료장비·인력 확보 필요

- ▷ 산재병원은 CT·MRI 등 의료장비가 절반 이상 노후화되고 의사 퇴사율이 높아 양질의 진료가 어려운 바, 기재부·노동부와 협의하여 장비를 교체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진료역량을 강화할 것

(14) 판결로 지급 결정되는 청구권에 대한 안내 체제 마련 필요

- ▷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공단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환자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급여의 차액은 대상자가 간단한 신청만 하여도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 등 대리인들이 합계 수백억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던 문제가 있음.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등을 개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체제의 구축을 검토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반복 및 노조 관련 부당노동 행위 등에 따른 기관장 책임 필요

- ▷ 현 이사장 재임 기간 중 국가자격시험에서 검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기관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을 받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바, 현 이사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2) 공공기관장 도덕성·책임성 확보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필요

- ▷ 임원의 정치적 편향 발언 및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옴부즈만 포럼을 신설·확대하며 다액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경영평가 D등급, 직원·노조 반발 등과 맞물려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훼손한바, 기관장 거취를 포함해 도덕성·책임성·예산 집행의 적정성 전반을 재점검할 것

(3) 해외취업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

- ▷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이후 현지 체류 실태·안전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고, 해외취업권 이보호센터를 통한 형식적 모니터링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소재 파악·위험 대응 체계는 미흡하므로, 해외취업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해외취업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4)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 소통 강화 필요

- ▷ 경영평가 하락과 각종 현안으로 기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대응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선제적 소통을 통해 조직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단이 처한 현실과 개선 노력을 정치권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

(5) 국가자격 시험 검정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 최근 발생한 국가자격 시험 검정사고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위탁시험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전문자격 시험 표준화 등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검정사고 재발을 방지할 것

(6)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 필요

- ▷ 국가자격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별로 구체적인 채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문제별 채점기준을 마련 및 구체화하고, 채점기준을 비공개하는 실기형(작업형) 시험은 자격특성을 고려하여 채점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점기준을 공개하며, 국가자격시험의 수험결과물을 기록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위험성평가 장려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전면 확대 검토 필요

-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감면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참여 사업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 반영이 부족한바, 제도의 산재 예방 효과성을 확인하고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필요

- ▷ 고위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사후 점검과 서류 위주의 관리에 기인하는바, 상시 점검 인력 확충과 작업허가 전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제로 전환할 것

(3)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체계 개선 필요

- ▷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편차가 크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산재 외 상담을 병행함에 따라 과로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 상담 수요 급증에도 다언어·통역 지원이 미흡한바, 내국인·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상담인력 충원, 운영 효율화 및 다언어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4)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강화 필요

- ▷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가격 부풀리기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반복 적발된 만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부서 확충 등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

(5) 이동식 에어컨 보급사업 부정수급 대응 강화 필요

- ▷ 폭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동식 에어컨 보급 지원사업에서 다수의 에어컨 제조사가 에어컨 냉방능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참여제한 외에도 환수·손해배상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

(6) 이러닝 콘텐츠 무상 보급 필요

-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이러닝 안전교육 콘텐츠를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유상 보급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하고, 영세 사업장 등 예산 부족 사업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무상 보급 계획을 수립할 것

(7) 건설·조선업 안전보건교육 체계 강화 필요

- ▷ 산재가 다발하는 건설업과 조선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온라인·집체 중심 교육을 체험·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며, 교육 인프라 투자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

(8) 산업안전보건 체험교육장 운영 개선 필요

- ▷ 전국 8개소 안전체험 교육장 중 4개소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노후화 및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며, 충남·경남 등 일부 지역은 교육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신규 교육장 설치 계획을 포함한 운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필요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직업훈련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훈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도 취업 실적 등 정량지표 위주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도 보완할 것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적합 일자리 제공 필요

- ▷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월평균 약 40만 원을 받는 1만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실행할 것

(3) 금융·보험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 ▷ 금융·보험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계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인식 개선과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진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1) 고용보험기금 편취 사건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필요

- ▷ 고용정보원 직원이 고용보험시스템을 조작해 수억 원의 기금을 편취하고도 일부 금액이 미환수되는 문제가 드러난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 전면 재정비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
- ▷ 고용보험시스템 허위지급 사건과 기관 전반의 청렴도·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2) 해외 취업 사기성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 해외 고수익 미끼 구인광고로 청년 납치, 감금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은 고용24 연계 구인공고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사전 차단 광고의 사후 관리 여부도 불명확한바, 고용24에서 관리하는 광고에 대한 차단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연계한 사후조

치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캄보디아 분교 추진 과정의 감사 및 사실관계 명확화 필요

- ▷ 이사장이 이사회·주무부처 협의 없이 캄보디아 분교를 기획하고 MOU 체결·홍보 후 임의 중단한바, 기존 ODA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 ▷ 해외 분교 설치에 외국인력 양성을 위해 국회의원이 먼저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추진된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의지 없는 사업’으로 평가한 것은 부적절한바, 사업 제안 경위와 추진 과정, 국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등을 검토할 것

(2) 폴리텍대학 지역균형 캠퍼스 확충 필요

- ▷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높은 취업률로 직업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이 경북 북부 등 캠퍼스 공백 지역의 산업 여건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캠퍼스 설립을 포함한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3)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감사 결과 환수·징계 필요

- ▷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의 위법행위 관련, 부당 집행된 국고 예산을 환수하고, 징계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

(4) 연구용역 운영의 공정성 제고 필요

- ▷ 직업교육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연구용역 발주 권한을 독점하여 이사장이 지인 및 관련 인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반복 발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금·부가금의 수준 현실화 및 정례 인상제도 도입 필요

- ▷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건설업이나 전 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2020년 이후 6년간 동결되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바, 연내 부가금 포함 공제부금 일액을 8,500원 이상으로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처럼 매년 자동 인상되는 정례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삭감된 숙련인력 훈련·취업지원 예산도 조속히 복구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구체적 자료 제공 필요

-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초기·성장기·성숙기 기업 지원 실적과 관련해 최근까지의 구체적 데이터를 종합하여 보고할 것

▶ 한국잡월드 ◀

(1) 잡월드 부당해고 처리 개선 필요

- ▷ 잡월드 직원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 전 다시 해임된 바, 징계·해고 절차를 바로잡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1) 노동교육원 기능 강화 및 노조법 교육 준비 필요

- ▷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개정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해 관련 커리큘럼 및 교재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준비할 것

3) 기상청 소관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돌발가뭄 감시·예측 강화 필요

- ▷ 금년 강릉 가뭄과 같은 재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돌발가뭄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할 것

(2) 재생에너지 예측 정보 제공 필요

- ▷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사량, 풍속 예측이 중요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3)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문자 확대 필요

- ▷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긴급재난문자의 다국어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확대 필요

- ▷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도가 낮으므로, 고해상도 시나리오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난기류 기상정보 제공 개선방안 마련

- ▷ 난기류에 대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기류 정보를 관측,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인공강우 기술 발전 필요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실험을 통해 성과를 확인한 현재 개발 중인 인공강우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갈 것

【기상인력 관련 사항】

(1) 기상청 예보 인력 및 역할 확대 필요

- ▷ 예보관 증원 노력을 통해 지방청에 12명이 증원되었으나, 위기상황에서는 예보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예보관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 ▷ 경북 북부지역은 면적이 넓고 재해도 빈번히 발생하는바, 기상대 인력 및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상장비 관련 사항】

(1) 국산 기상장비의 활용성 제고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 자체 기술로 개발된 기상 장비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산

기상 장비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와 장비 품질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2) 기상전문기관 제도 활성화 필요

- ▷ 지자체 등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기상전문기관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기상관측 표준화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천리안위성 5호 사업 관리 철저

- ▷ 위성 관측자료는 수치모델 연구,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의 추가 지연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기상관측장비 보안 강화 대책 필요

- ▷ 과거 악성코드가 포함된 연직바람관측장비를 납품했던 업체가 업체명을 바꿔서 동일 장비를 납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관측장비 도입 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5) 슈퍼컴퓨터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

- ▷ 슈퍼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장애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기상행정 관련 사항】

(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 회수율 향상 필요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과거 대비 27.5% 높아졌지만, 유럽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으므로, 원가 회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무분별한 기상 정보 콘텐츠 확산에 대한 대책 필요

-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 확산은 기상청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양성화하거나 제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3) ODA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 몽골, 라오스 ODA 사업에서 납품 지연 등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 위원회의 체제 및 역할 재편 노력 필요

- ▷ 새 정부에서 사회 근본적인 의제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위원장 교체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체제 및 역할을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사회적 대화 중립성 확보 및 노사 협의 강화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관련하여 법정 정년 연장보다 사용자 중심의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는 등 균형성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사 협의와 대화를 강화할 것

(3)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해 국회의 약속을 받거나 대통령이 노동계와 직접 대화를 통해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일본식 계속고용을 한국식으로 수용할 방안 연구 필요

- ▷ 법정 정년 연장을 곧바로 하는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청년층의 어려움도 심화될 것이며, 일본식 계속고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연령차별 금지 원칙으로 인해 임금 조정이 어려운 등 난점이 발생하는데, 일본과 싱가포르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 일본식 계속고용을 한국식으로 수

용할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

(5) 산업안전 관련 사회적 대화 확대 필요

- ▷ 산업안전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6)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 관련 역할 수행 노력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 과정에 역할 수행이 미비하였으므로,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

- ▷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